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 경기북부장애인인권포럼

- 장애인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

| 일시 | 2021.12.7. (화) 14:00

| 장소 |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 경기북부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일 시 : 2021. 12. 07. (화) 14:00

장 소 :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 지하1층 컨벤션 II

 YouTube 생중계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채널)

2021년 경기북부장애인인권포럼

인 사 말

양영희 관장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	---

축 사

방재을 위원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3
권달주 회장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5
은중균 관장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7

활동보고

2021년 상담 현황 보고서	11
2021년 경기북부 대형마트 장애인 편의 실태조사 보고서	19

발 제

장애인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 박현희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증괄팀장)	41
--	----

토 론

‘장애인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에 부쳐 -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휴먼개발학부장)	61
주객전도(主客顛倒)된 활동지원서비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박 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외협력실장)	65
장애인 학대 예방·개선을 위한 녹음의 활용 및 활동지원기관의 역할강화 방안 - 나동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변호사)	75
활동지원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 - 김용란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83

일 정 표

시 간		내 용
부터	까지	
13:30	14:00	○ 등록 및 접수
14:00	14:10	○ 개회식 ○ 인사말
1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활동보고		
14:10	14:40	○ 보고1. 2021년 상담 현황 보고서 - 발표자 : 채국현 (권리옹호팀) ○ 보고2. 2021년 경기북부 대형마트 장애인 편의 실태조사 보고서 - 발표자 : 백주현 (교육정책팀장)
14:40	14:50	○ 휴식시간
2부. 장애인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14:50	15:20	○ 발제. 장애인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 박현희 (총괄팀장)
15:20	16:30	○ 토론1. '장애인학대예방을 위한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부처 -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장) ○ 토론2. 주객전도(主客顛倒)된 활동지원서비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박 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외협력실장) ○ 토론3. 장애인 학대 예방·개선을 위한 녹음의 활용 및 활동지원기관의 역할강화 방안 - 나동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변호사) ○ 토론4. 활동지원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 - 김용란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16:30	-	○ 폐회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부쩍 추워진 날씨와 함께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도 이제 한달여가 남았습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인권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돌아보니 바쁘게 달려왔고 많은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학대예방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저희기관에 활동과 사업을 여러분들께 보고하면서 그동안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자립을 방해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면서 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개선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차별을 없애고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다양한 차별과 학대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있고 장애인을 학대하는 행위자가 대부분 가까운 지인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장애인을 지원하고 가까이에서 가장 장애인을 잘 아는 활동지원사의 역할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항상 되돌아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사말

그러나 많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한계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활동지원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바쁘게 달려온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 직원들과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지역에서 함께 애써주신 장애단체, 유관기관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2022년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열정으로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2021년 12월 07일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장 양 영 희

안심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방재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울 위원장입니다.

오늘 “장애인 확대예방을 위한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1년 경기북부장애인인권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포럼 개최 준비에 애써주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양영희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포럼 개최를 축하해 주신 사단법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권달주 회장님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균 기관장님, 보고를 해주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백주현 교육정책팀장님과 채국현 상담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수원시흥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 김민수 시설장님, 발제를 해주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현희 총괄팀장님과 토론자로 수고해주실 나사렛대학교 우주형교수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현 대외협력실장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나동환 변호사님,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용란 활동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 팬데믹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더욱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아직도 많은 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한, 코로나는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을 대면에서 비대면 서비스까지 요구하도록 변화시켰고 이에 따라 키오스크, 편의시설 앱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접근성에 취약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올 우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축 사

오늘 포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논의되어 경기도 모든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써 안심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가 사라져 누구나 살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관심과 정책제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경기북부장래인인권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학대와 차별을 넘어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의 길로

권 달 주 (사)경기장애일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안녕하세요. 경기장애일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권달주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가 우리의 삶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코로나19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바이러스 자체로도 치명적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 속의 고립과 배제를 특히 더 느끼기에 하루하루가 힘겨운 나날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2021년 경기북부장래인인권포럼을 준비해주신 양영희 기관장님과 박현희 총괄팀장, 백주현 교육정책팀장을 비롯해 함께하는 모든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학대는 옛날 일이 아닙니다. 인권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오산 성심재활원, 여주 라파엘의집, 2020년 평택 사랑의집, 2021년 화순 동산원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해에도 여러 건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 학대가 발생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시설화된 구조가 학대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정권이 없고 선택권이 없는 획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혜적 복지에서 벗어나 권리로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받는 지역사회 맞춤형 통합 서비스로 탈시설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1년 정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 따르면, 탈시설을 2041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거주시설 장애인의 평균 시설 입소기간이 18.9년임을 감소했을 때, 2041년에 탈시설하는 장애인은 평균 40년을 시설에서 거주한 후에야 자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대에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이 60대, 40대에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이 80대에 자립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축 사

인권에는 나중이 없다는 말은 이러한 숫자를 보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천천히, 순차적으로 기다리다 보면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기다리다가 스러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권포럼에서 나뉘질 사례들과, 활동지원사업 개선방안을 통한 장애인 학대 예방 토론을 통해 한국 사회와 경기도가 장애인의 학대와 차별을 넘어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보장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2021년 경기북부장애인인권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내·외빈 및 온라인을 통해 함께 해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애로 인해 차별받고,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 되도록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안녕하십니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관장입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21년 경기북부장애인인권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포럼 준비를 위해 애쓰신 양영희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대회를 통하여 경기북부지역 내 다양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증진에 많은 변화와 긍정적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국비지원을 받게 되어 더욱 안정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침해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19로 우리 삶에 적지 않은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장애인당사자들의 삶은 더 차별적이고,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은 어느 해보다 장애인학대에 대한 언론과 우리사회의 관심이 컸습니다. 그 만큼 장애인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어 우리의 역할이 중요함을 느끼게 합니다. 또 관련 법률과 제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애인학대를 범죄로 규정하는 관련 법률 조항이 시행되었고, 신고의무자 직군의 확대와 함께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강화하는 법률이 개정되는 등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고 편들기 위한 우리의 역할과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사회도 장애로 인해 차별받고,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 장애인의 삶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여건이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모두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축 사

오늘 경기북부장래인인권포럼이 지역 장애인의 안전과 기본권 보장에 큰 힘이 되는 포럼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과 장애인의 옹호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포럼 준비를 위해 애쓰신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전하며, 함께하고 계신 모든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북부장래인인권인옹호기관 활동보고

보고자료 1

2021년 상담 현황 보고서

[경기북부장애인인권익옹호기관]

I. 2021년 상담분석 개요

1. 법적근거

경기북부장애인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11(장애인인권익옹호기관설치 등)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피해자지원, 사후관리 등 장애인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조사 및 그에 따른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2. 목 적

경기북부장애인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와 차별에 대한 다양한 상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 장애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3. 기 간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9월 30일.

4. 대 상

경기북부장애인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상담.

[신고접수]

(단위: 건, %)

학대		차별		일반상담		계	
169	58	10	3	115	39	294	100

2021년 9월말 기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접수는 총 294건으로 장애인학대 의심사례가 169건으로 58%, 일반상담이 115건으로 39%를 차지하였으며 차별과 관련된 상담이 10건으로 3%를 차지하였다.

2020년 9월말 기준 215건 접수된 사례와 비교하면 2021년 9월말 기준 접수 사례는 294건으로 작년 대비 37% 증가된 것을 확인할수 있다.

학대사례는 2020년 9월말 기준 102건, 2021년 9월말 기준 169건으로 작년 대비 65.6% 증가, 일반상담은 2020년 9월말 기준 99건, 2021년 9월말 기준 115건으로 작년 대비 16.1% 증가하였고 차별 상담은 2020년 9월말 기준 14건, 2021년 9월말 기준 10건으로 작년 대비 2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고접수]

(단위: 건, %)

구분	건	계
연천	43	15
동두천	18	6
양주	22	7
포천	38	13
의정부	37	13
남양주	21	7
파주	30	10
고양	44	15
구리	14	5
가평	6	2
기타	21	7
계	294	100

2021년 9월말 기준 상담 접수된 지역을 살펴보면 고양이가 44건, 연천이 43건, 포천이 38건으로 상담이 많이 접수되었다.

기타의 경우 일반상담으로 당사자가 지역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거나 그 외 지역에 해당된다.

[성 별]

(단위: 명, %)

남성		여성		파악안됨		계	
155	53	135	46	4	1	294	100

2021년 경기북부장애태인인권익옹호기관 9월말 접수된 상담 294건 중 남성은 53%(155명), 여성은 46%(135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7% 높게 나타났다. 파악안됨의 경우 일반상담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연 령 대]

(단위: 명, %)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기타	계
32	76	43	42	51	23	5	1	21	294
10.7	26	15	14	17	8	2	0.3	7	100

상담 접수 연령대는 20대가 26%(76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 17%(51명), 30대 15%(43명), 40대 14%(42명)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단위: 건, %)

장애유형	건수	비율
지체장애	28	9.5
뇌병변장애	23	8
시각장애	13	4.4
청각장애	3	1
언어장애	6	2
지적장애	170	58
자폐성장애	3	1
정신장애	19	6.4

신장장애	0	0
심장장애	1	0.3
호흡기장애	0	0
간장애	0	0
안면장애	0	0
장루·요루장애	1	0.3
뇌전증장애	1	0.3
미등록	26	8.8
계	294	100

※중복 장애 미포함

장애 유형별 상담 접수는 지적장애가 58%(170건)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 9.5%(28건), 다음으로 미등록이 8.8%(26건), 뇌병변장애가 8%(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의 피해자가 미등록 장애인인 경우에도 등록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학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록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신고접수 방법]

(단위: 건, %)

전화	온라인	문자	팩스	우편	내방	기타 (인지포함)	계
189	12	2	35	0	6	50	294
64	4	1	12	-	2	17	100

신고는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고, 장애인학대 정보시스템 문자신고, 팩스·우편을 통한 신고, 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내방신고 및 상담원이 사례를 알게 되어 접수하는 인지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다.

[신고접수 경로]

(단위: 건, %)

신고	인지	연계	연계(경찰통보)	이관	계
212	47	2	32	1	294
72.1	16	0.6	11	0.3	100

접수 경로는 신고가 72.1%(212건) 차지하였고 그 외 상담원의 인지를 통한 상담이 16%(47건)로 차지하였으며 경찰통보를 통한 연계가 11%(32건)을 차지하였다.

연계는 유관기관을 통한 신고접수이며 이관은 피해장애인의 주소 확인결과 경기북부의 거주하여 경기북부장래인인권익용기관으로 이관된 것을 나타낸다.

연계(경찰통보)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방법]

(단위: 건)

구분	방문	내방	전화	기타	조사불가	계
피해자 조사	95	5	24	3	42	169
행위자 조사	55	1	29	6	78	169
관련자 조사	147	3	79	8	6	243

상담 조사는 피해자, 행위자, 관련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며, 상담조사 방법으로는 방문, 내방, 전화, 기타로 진행되며 상담 조사 시 조사 대상자의 연락 불가, 의사소통 불가, 사망, 수감, 조사거부, 경찰 수사 중, 타 기관 조사 중, 부재중으로 조사가 불가되는 경우도 있다.

학대의심사례 조사 시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응급조치는 피해장애인 쉼터 등으로 연계하거나 의료기관 인도를 통해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학대신고 사례판정]

(단위: 건, %)

학대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조사 중		계	
72	42.6	64	37.9	16	9.5	17	10	169	100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례판정 절차를 통해 판단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회의에서 장애인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비학대사례로 판정하며, 사례회의에서 사례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학대 판정위원회를 거쳐 학대여부를 판정한다.

장애인학대사례란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례를 말한다. 잠재위험사례는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로 비학대사례이지만 향후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비학대사례는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로 구분한다.

2021년 9월말 학대의심신고 169건중 72건이 학대사례로 판정되었으며 비학대사례가 64건, 잠재위험사례가 16건, 조사 진행 중인 사례가 17건으로 나타났다.

[사례판정 학대 유형]

(단위: 건(명), %)

학대유형	상담건(명)	비율(%)
신체적학대	7	8
정서적학대	17	19.5
성적학대	2	2.3
경제적착취 (노동력착취 포함)	35	40.2
유기	0	0
방임	26	30
계	87	100

※ 중복학대 포함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중 경제적착취(노동력착취포함)가 40.2%(35건), 방임 30%(26건),

정서적학대 19.5%(17건), 신체적학대 8%(7건), 성적학대 2.3%(2건) 순으로 판정이 되었다.

[피해자지원유형]

(단위: 건, %)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교육	상담	중재	기타	계
15	29	85	171	60	0	872	19	36	1,287
1.1	2.2	6.6	13.3	4.7	0	67.8	1.5	2.8	100

2021년 9월말 접수 기준 상담 및 지원은 총 1,287회의 피해자지원이 진행되었다.

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기타 등의 영역으로 나눠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한 사례에 여러 가지의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지원은 학대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 등의 치료와 피해의 회복을 돕는 것으로 통원치료나 검진 등을 말한다. 심리지원은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심리진단,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거주지원은 피해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는 지원으로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신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법지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 및 사법절차, 법률상담이 해당된다.

복지지원은 장애인등록,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제도, 활동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자원 연계를 말한다. 그 외 피해장애인과 학대행위자 간 중개, 교육연계, 진정, 행정처분 요구, 피해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이뤄지는 상담 등을 말한다.

[일반사례 신고접수]

(단위: 건, %)

고용	차별										일반			계
	교육	재화/용역/일반	보험/금융	시설물접근	이동/교통수단	정보접근/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	사법/행정	참정권	기타	정보문의	불만/민원	기타	
2	0	1	1	1	0	0	0	2	0	3	84	4	27	125
1.6	0	0.8	0.8	0.8	0	0	0	1.6	0	2.4	67.2	3.2	21.6	100

일반상담 및 차별상담의 신고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사례는 정보문의 사례가 주로 접수되었으며 차별에서는 고용, 시설물접근, 정보접근·의사소통, 사법·행정 및 기타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담의 처리결과는 정보제공과 정서적지지,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이 등이 있다.

보고자료 2

2021년 경기북부 대형마트 장애인 편의 실태조사 보고서

- 직원의 도움 없이는 물건을 살수 없는 대형마트
- 여전히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 화장실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

- 지하1층에 매장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은 직원을 호출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불렀더니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 휠체어를 타고는 휴게실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입구가 좁아서 휠체어가 걸려요.
- 장애인 화장실은 있는데 입구가 좁아서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 점자유도블록은 있으면 뭐하나요? 자기네들 행사한다고 다 덮어 놔는데?
- 지하 식품매장으로 내려가고 싶는데 엘리베이터는 안내려가니 무빙워크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저 휠체어 이용하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I. 조사 배경 및 목적

1. 조사 배경

○ 우리는 각기 다른 목표에 의해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 순환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존과 의식주해결이라는 근간을 두고 있다. 경제순환의 소비 비중을 보았을 때 가장 높은 비율과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단연 일상용품, 식품 등이 포함된 일상소비이며, 이 소비의 행위 자체만 보았을 때는 장애·비장애를 떠나서 모두가 그 활동을 통한 즐거움을 평등하게 누리고 싶어한다. 이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욕구로 사회참여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¹⁾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84.4%가 혼자만의 힘으로 외출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집 밖 활동시 불편함을 느낀 응답자는 46.6%이고, 이 불편함을 느끼는 주된 이유가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라고 응답한 수는 49.7%로 불편함의 이유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그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며, 또 다른 의미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8조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로 구분 지어 볼 수 있다.

○ 또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발표문²⁾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며 식료품 및 일상용품 구매가 어려워 졌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42.5%로 나타남에 따라 대형마트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장애인이 보장 받아야 하는 권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2. 조사 목적

- 장애인의 대형마트 접근성 및 이용 시, 편의제공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를 위한 법 규정 안내 및 가이드 제시
- 지역사회 장애인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시설의 환경 조성

1)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결과발표 이후, 최종보고서는 발간되지 않음.)

II. 문제인식 (도입)

[서울 대형마트들 장애인 배려 ‘나 몰라라’]

(발췌 : 한국경제 2013.04.18.)

서울 시내 대형마트 3대 업체가 장애인 이용객의 접근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중략 -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역시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53개 매장 가운데 외부 유도블록이 있는 곳은 단 2곳(3.8%), 내부 유도블록이 있는 곳은 12곳(22.7%)에 그쳤다.

일부 매장에 설치된 유도블록도 주로 카트보관소나 화장실 앞에 있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아예 없는 곳이 9곳(16.9%)에 달했다.

전용 화장실을 갖춘 44개 매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곳(54.7%)은 1개 층에서만 운영하고 있었다.

휠체어를 보유하지 않은 매장도 10곳(18.9%)이나 됐다.

게다가 과반이 넘는 매장(28곳 · 52.8%)에선 단 1대의 휠체어만 갖고 있는 등 사실상 ‘생색내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매장에선 휠체어를 백화점과 공유하거나 휠체어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는 등 관리가 소홀했다.

- 이하 생략 -

[대형마트 이용실태 조사결과 장애인주차구역 10대중 9대 불법주차]

(발췌 : 시민일보 2015.02.11.)

대형마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90%가 불법주차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 중 략 -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율은 90.6%로, 보행장애인의 합법적 이용은 9.4%에 불과했다.

불법주차 유형은 일반차량 36.4%, 장애인 표지는 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63.6%로 조사 됐다.

- 이하 생략-

[“대형마트 직원이 장애인 안내견에 고성” ... 마트측 공식사과]

(발췌 : MBC 2020.11.30.)

서울 잠실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이 SNS에 올라온 가운데, 마트 본사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OO마트는 오늘 오후 발표한 공식 사과문을 통해 “안내견 훈련자를 응대하는 과정에서 훈련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중인 안내견에 대한 내부 지침과 인식을 명확히 해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SNS에는 OO마트 잠실점 관계자가 훈련 중인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가로막고 “장애인도 아닌데 개를 데려오면 어떡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는 게시글과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안내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는 훈련 중인 안내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이하 생략 -

Ⅲ. 대형마트 실태조사 조사원 사전교육

- 일 시 : 2021년 10월 26일 (화) 오후 2시 ~ 오후 4시
- 장 소 : 경기북부장래인인권익옹호기관 교육실
- 참여자 : 조사원 5명
 <조사원 선정기준 : 실태조사 유경험자이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
- 교육내용: 장애인관련법,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안내, 체크리스트 작성법 등
- 교육자 : 경기북부장래인인권익옹호기관 교육정책팀장 백주현
- 사진



Ⅳ. 조사 방법

1. 조사기관 선정 및 조사 항목

이번 조사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대형마트 32곳을 선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 이라 한다)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에 따른 문화 활동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의 제공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27일 ~ 11월 05일 까지 실시하였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의 규정에 따라 매개시설(장애인 주차구역, 경사로, 주 출입문 등), 내부시설(복도, 계단,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안내시설(촉지도, 점자블록 등) 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따른 장애인의 이용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매장 별 65개의 세부 조사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2. 체크리스트 작성

본 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2018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애인의 시설물접근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첫째,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조사항목을 포함하였다. 법에 따라 접근로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설치 현황 및 적정 설치 현황을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접근로, 주출입구높이 차이제거, 출입구(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승강기,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시설, 청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시설, 피난 및 대피시설, 점자블록 등이 포함이 된다.

둘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조사항목을 구성하였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편의제공은 편의시설 설치 및 정보제공, 인적지원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장애인에게 필요한 인적지원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 등을 조사하였다.

3. 조사 방법

본 실태조사의 조사 방법은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하였다.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조사 대상 시설에 공문발송을 통해 사전에 실태조사의 목적을 밝히고 조사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조사원은 현장교육을 이수한 후 조사원 명찰을 패용하고 조사현장에 투입되어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32곳 대형마트를 방문하여 조사하였고, 32곳 모두 조사가 완료 되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 조사대상 대형마트 (32곳)³⁾

연번	시군구	시 설 명	비 고
1	고양시	이마트 일산점	-
2		이마트 킨텍스점	-
3		이마트 화정점	-
4		이마트 풍산점	-
5		이마트트레이더스 킨텍스점	-
6		이마트트레이더스 고양점	-
7		롯데마트 고양점	-
8		롯데마트 화정점	-
9		롯데마트 주엽점	-
10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	-
11		홈플러스 일산점	-
12		홈플러스 킨텍스점	-
13		코스트코 일산점	-
14	남양주시	이마트 남양주점	-
15		이마트 별내점	-
16		이마트 다산점	-
17		이마트 진접점	-
18		롯데마트 덕소점	-
19		롯데마트 마석점	-
20		홈플러스 진접점	-
21	동두천시	롯데마트 동두천점	-
22	양주시	이마트 양주점	-
23	의정부시	이마트 의정부점	-
24		롯데마트 장암점	-
25		홈플러스 의정부점	-
26		코스트코 의정부점	-
27	파주시	이마트 파주운정점	-
28		이마트 파주점	-
29		홈플러스 파주문산점	-
30		홈플러스 파주운정점	-
31	포천시	이마트 포천점	-
32		홈플러스 포천송우점	-

3) 바닥면적 1,000㎡이상 (‘판매시설’에 해당)인 곳으로 그 이하에 해당하는 곳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되었음.

V. 편의시설 및 이용 실태조사 결과

1. 건물 들어가기 전

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위:%)

문항	예	아니오
1-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100.0	0.0
1-2. 장애인 주차구역이 다른 일반 주차구역보다 면적이 넓습니다.	84.4	15.6
1-3. 장애인 주차구역은 건물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93.8	6.3
1-4. 장애인 주차장 바닥의 색상이 다릅니다.	71.9	28.1
1-5. 장애인 주차장 바닥에 휠체어 그림이 있습니다.	100.0	0.0
1-6. 장애인 주차장에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100.0	0.0
1-7.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에 불편이 없습니다. (물건적재, 비장애인차량주차, 주차통로막음, 출입구쪽 단차 등)	93.8	6.3
1-7-1. 불편하다면 내용을 기재해주세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곳은 100%로 모든 매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으며, 장애인 주차구역의 면적과 건물 출입구와의 거리가 적절한 곳은 84.4%~93.8%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차장의 바닥 색상과 휠체어 그림, 안내표지판의 기준을 모두 갖춘 곳은 23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바닥의 색상이 잘못 되어 있는 곳이 28.1%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용 불편에 관한 의견으로는 면적이 작아 휠체어 이용장애인은 사용하기에 어려운 곳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바닥의 색상이 같고 면적이 부적합한 주차장

바닥의 색상이 같고 출입구와 거리가 먼 주차장

나. 경사로 (주출입구 / 주차장입구)

(단위:%)

문항	예	아니오
2-1. 경사로는 필요합니다. (계단이 있는 경우)	3.1	96.9
2-2. 경사로는 필요한 경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00.00	-
2-3. 경사로의 기울기는 휠체어로 이동하기에 적합합니다. (스쿠터 등 보장구 포함)	100.00	-
2-4. 경사로의 폭은 휠체어로 이동하기에 적합합니다.	100.00	-
2-5. 경사로 바닥은 미끄럽지 않습니다.	100.00	-
2-6. 경사로는 고정식입니다.	100.00	-
2-7. 경사로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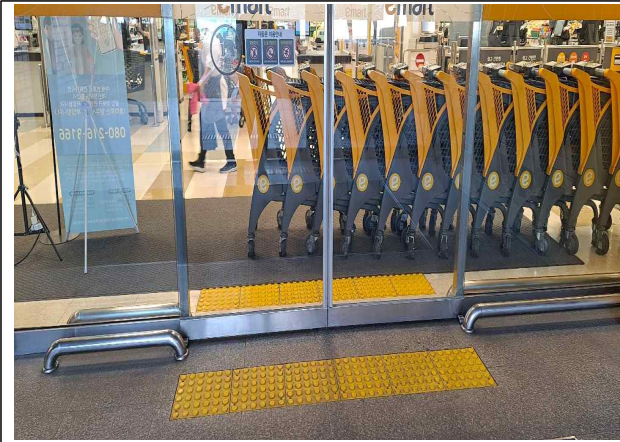
경사로의 결과이다. 조사대상 대형마트 32곳 중 1곳만 주차장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가 필요할 정도의 단차가 있는곳이었으며, 나머지 31곳은 단차가 없어 경사로의 설치가 필요 없는 곳에 주출입구와 주차장입구를 설치하였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이 경사로 설치가 필요한 1곳의 출입구에는 경사로는 법령에 따라 설치가 완료 되어 있어, 경사로는 관련한 설치 완료율은 100%를 나타내었다.

다. 출입구

(단위:%)

문항	예	아니오
3-1. 주 출입구에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62.5	37.5
3-1-1. 점자유도블록은 부서짐 없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서짐, 연결 끊김, 적재물 비치 등이 없는지 확인)	75.0	25.0
3-1-2. 점자유도블록의 재질이 미끄럽지 않습니다.	95.0	5.0
3-2. 출입문의 폭은 휠체어가 통과하기에 적합합니다. (최소 90cm 이상)	100.0	0.0
3-2-1. 불편하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폭이 좁다, 턱이 있다, 회전문 외에 다른 문이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제한하는 경우 등)	-	-

출입구의 점자유도블록 설치율은 62.5%로, 이 가운데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75.0%로 나타났다. 또한 점자유도블록의 연결이 끊기거나, 출입구에 카트 등의 장애물등이 있는 경우, 행사장 설치로 인해 점자유도블록을 가린 경우도 있었다.



카트로 입구가 막힌 출입구



도난방지를 위해 장애물을 설치하여 휠체어의 진출입이 어려운 출입구



행사를 위해 설치한 천막구조물로 덮힌 점자유도블록



점자유도블록이 설치 되지 않은 출입구

2. 건물 안

가. 안내사항

(단위:%)

문항	예	아니오
1-1. 건물 앞에 안내를 위한 촉지도(점자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1	96.9
1-2. 촉지도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00.0	0.0
1-3. 촉지도 등이 점자유도블록과 연계되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100.0	0.0

건물 앞 촉지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93.8%로 조사대상 중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촉지도가 설치 되어 있는 1곳은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었으며, 촉지도 앞까지 점자유도블록이 연계되어 있었다.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판매시설의 유도 및 안내설비는 권장 사항에 속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권장’ 이라는 것은 ‘의무가 아닌 것’ 과는 달리 ‘필요가 있다’ 가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

나. 고객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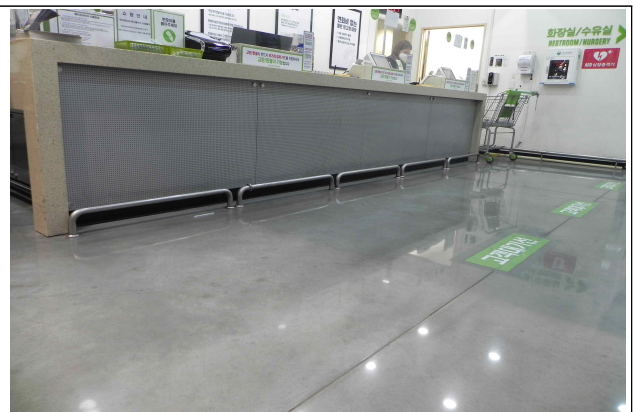
(단위:%)

문항	예	아니오
2-1. 안내데스크의 높이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합니다.	53.1	46.9
2-2. 안내데스크 전면 30cm에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0.0	100.0
2-3.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높이가 적합합니다.	24.0	76.0
2-4.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음성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48.0	52.0
2-5.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96.9	3.1

고객센터 이용을 위한 조사결과이다. 우선, 안내데스크의 높이·폭 등이 고려되지 않아 휠체어의 접근이 불가능 곳이 46.9%로 나타났으며, 안내데스크까지 점자유도블록이 설치 되어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어 매우 취약하게 나타났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경우 7곳을 제외한 25곳에 설치 되어 있었으나, 이중 높이가 맞지 않아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 76.0% 였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안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았던 곳이 52.0%로 나타났다.

또한, 마트 이용을 위해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는 곳은 96.9%(32곳中 31곳)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중 11곳은 1~2대의 휠체어만 구비하고 있어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점자유도블록이 설치 되어 있지 않으며, 하단에 봉으로 막아 진입 할 수 없는 안내데스크



점자유도블록이 설치 되어 있지 않으며, 하단폭이 고려되지 않아 이용이 불편한 안내데스크

다. 복도 및 통로

(단위:%)

문 항	예	아니오
3-1. 복도 폭이 휠체어 두 대가 마주 보고 통행하기에 적합합니다. (1.2m 이상)	100.0	0.0
3-2. 복도나 통로 바닥표면이 미끄럽지 않습니다.	96.9	3.1
3-3. 매장 안 모든 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0.0	0.0
3-4. 매장 안을 모두 이용할 수 없다면 이유를 적어주세요.	-	-

복도 및 통로의 조사결과이다. 복도의 폭과 바닥표면은 100.0%, 96.9%로 적절하게 나타났으며, 매장 모든 곳의 진열품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통로를 확보하고 있었고, 일부 진열통로가 좁아 이용에 불편함은 있었으나, 이용 할 수는 있는 상황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라. 안전사항

(단위:%)

문 항	예	아니오
4-1. 화재 등 비상시 장애인의 비상대피를 위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	31.3	68.8
4-2. 비상사태를 위해 설치된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①비상점멸등	100.0	0.0
②소화기	100.0	0.0
③비상벨	100.0	0.0
④완강기	50.0	50.0
⑤유도등	96.9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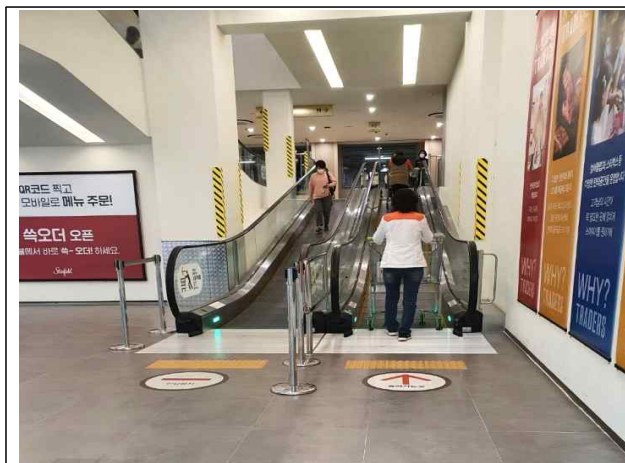
비상시 장애인을 위한 비상 대피 매뉴얼이 있는 곳은 31.3%로 조사되어 화재 등 비상시 장애인의 안전이 매우 취약하게 나타났다. 해당조사매장 32곳중 비상점멸등, 소화기, 비상벨, 완강기, 유도등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곳은 16곳이며, 비상점멸등과 소화기, 비상벨 설치는 100%, 완강기 50.0%, 유도등 96.9%로 비상 사태를 위해 설치되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미흡 한 것은 완강기로 조사되었다.

마. 무빙워크

(단위:%)

문항	예	아니오
5-1. 탑승 시점에 안전에 대한 안내문이 있습니다. (화면안내, 음성안내 등)	90.6	9.4

대형마트와 같은 대형이용시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무빙워크는 승강기의 일종으로서 층간이동에 사용되는 설치물이다. 이는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이하 승강기 운영규정)에 의해 안전수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상,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안전상의 문제로 탑승 할 수 없다. 단, 특수하게 제작 된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등의 안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특수 제작된 무빙워크가 도입된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관계로 무빙워크가 설치 된 모든 곳에서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에 관한 안내문 또는 화면이나 음성으로 안내하여야만 한다. 조사결과, 90.6%는 이러한 안내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9.4%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대한 안내가 없는 무빙워크



안전고지는 있으나 휠체어 등의 탑승위험 고지가 없는 무빙워크

바. 엘리베이터

(단위:%)

문항	예	아니오
6-1.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오 선택시 10번 문항으로 이동해주세요)	100.0	0.0
6-2. 엘리베이터 조작반에 시각장애인용 점자가 있습니다.	93.8	6.3
6-3. 엘리베이터에 장애인용 조작반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옆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71.9	28.1
6-3-1. 옆면 조작반의 높이는 이용하기 적합합니다.	75.9	24.1
6-4. 엘리베이터에 점멸안내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5.6	84.4
6-5. 엘리베이터 대기공간에 점자유도블록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 앞 설치 X, 조작반 아래쪽에 설치O)	71.9	28.1
6-6. 엘리베이터 앞쪽에 대기공간은 휠체어 회전이 가능합니다.	100.0	0.0
6-7.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휠체어 회전이 가능합니다.	100.0	0.0
6-7-1. 휠체어의 회전이 불가능한 경우 내부 전면에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
6-8. 엘리베이터 내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87.5	12.5
6-9. 엘리베이터 내부 벽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0.0	0.0
6-10.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층으로 이동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	-

엘리베이터는 조사대상 모든 매장에 설치가 되어 있었다. 다만, 이중에 점멸안내등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84.4%로 매우 미흡하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용 조작반이 없거나, 있어도 이용이 불편한 위치에 설치된 곳도 있었다.

대기공간의 점자유도블록 설치도 없거나 잘못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카펫 등으로 덮어 고정시켜, 무용지물인 곳도 있었다.



사. 장애인용 화장실

(단위:%)

문항	예	아니오
7-1. 건물 내부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93.8	6.3
7-2. 장애인용 화장실이 실제로 이용 가능합니다. (예:창고·문을 잠가 놓은 경우 등 확인)	96.8	3.2
7-3. 장애인용 화장실 문을 닫고 안에서 휠체어 회전이 가능합니다.	80.6	19.4
7-4.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96.8	3.2
7-5. 장애인용 화장실 내의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포함)	100.0	0.0
7-6. 세면대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는 점자표시가 있습니다.	3.2	96.8
7-7. 장애인 화장실 내부에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58.1	41.9
7-8. 장애인용 화장실 이용 시 불편한 점을 적어주세요. (화장지 길이 위치, 바닥 미끄럼, 출입문 등)	-	-

장애인용 화장실의 조사결과이다. 건물 내부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는 곳은 93.8%이며 그 중 실제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96.8%로 조사되었다. 장애인용 화장실의 남녀구분이 되어있지 않은 곳이 3.2%로 나타났으며, 세면대 수도꼭지의 점자표시나 비상벨 설치가 3.2%와 58.1%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입구에 턱이 있거나 좁아서 실질적으로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으며, 화장실 휴지걸이가 먼 곳에 위치하여 이용에 불편한 경우도 나타났고, 안전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하였지만 좁은 공간으로 인해 휠체어 회전이 되지 않거나 문을 닫을 수 없는 곳도 있었다.



입구에 턱이 있어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용 화장실

공간확보가 되지않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용 화장실

각종 청소도구가 놓여있는 장애인용 화장실

철문으로 되어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용 화장실

아. 편의제공

(단위:%)

항 목	예	아니오
8-1. 휠체어를 이용하여 마트 내 모든 공간(직원전용 공간 제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84.4	15.6
8-2. 코로나19로 인한 체온 체크, 출입명부 작성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100.0	0.0
8-3. 계산대 폭이 휠체어를 이용하여 지나가기 적합합니다.	90.6	9.4
8-4. 마트 이용시 불편한 점을 모두 적어주세요.	-	-

대형마트 이용시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마트 이용에 있어 자유롭게 모든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84.4%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가 15.6%로 나타났다.

그렇지 못한 이유로는 모두 층간이동의 문제였는데,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승강기 운영규칙에 따른 규정 상 무빙워크를 이용할 수 없어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층간을 이동해야 하나, 매장이 지하부터 지상까지의 구조를 가졌고 엘리베이터가 1층 이하로는 이동하지 않는 곳이 존재하였다. 그 이유는 계산대가 지하매장에는 없이 1층에만 위치하고 있고, 엘리베이터가 매장 내부가 아닌 통로에 위치하였기에 지하까지 승강기가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절도에 우려가 있어서 잠금을 해 놓은 것이다.

<그림설명>



이러한 경우, 직원 호출을 통해 엘리베이터의 잠금 장치를 풀고, 지하로 연결된 창고로 이동하여야 하고, 다시 지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그 창고통로에서 직원을 호출해야만 가능하였다.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다른 곳의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무빙워크 외에는 없으니 휠체어 이용과 상관없이 그냥 무빙워크로 내려가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 이는 상단 조사항목 ‘**마. 무빙워크**’에서 설명한 승강기 운영규칙의 명백한 위법이 되는 사항이었으며, 이와 관련된 매장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매장이 되는 것이다.

그 외에 계산대 폭이 좁아 물품 구매를 할 수 없는 곳이 9.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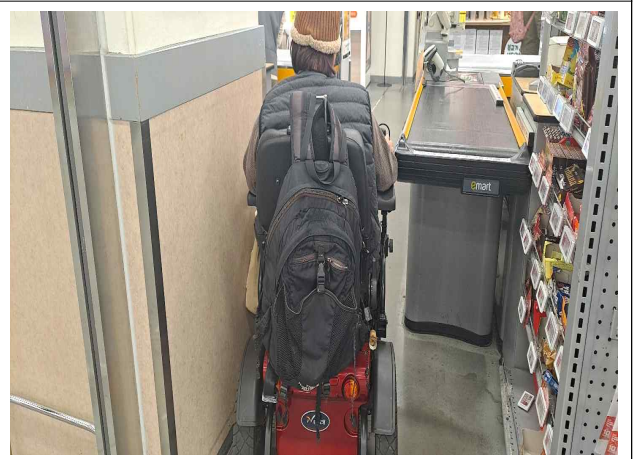
지하매장에는 내려갈 수 없는 엘리베이터



직원의 안내를 통해 내려간 지하 창고 모습



직원호출을 통해 창고를 지나 지하매장에 들어갈 수 있는 대형마트



폭이 좁아 지나갈 수 없는 계산대



폭이 좁아 이용이 불편한 계산대



폭이 좁아 이용이 불편한 계산대

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단위:%)

문항	예	아니오
9-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이 있나요? (아니오 선택시 아래 문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96.8	3.2
9-2. 임산부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 되어 있나요?	93.1	6.9
9-3. 임산부 휴게시설 내부에서 휠체어의 회전과 이동을 할 수 있는가요? (내부 공간의 넓이 확인)	86.2	13.8
9-4. 수유실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나요? (기저귀교환대,세면대등의설비가설치되어야함)	100.0	0.0
9-5. 기저귀 교환대, 세면대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나요? (높이, 휠체어 접근성 등)	79.3	20.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이 있는 곳은 96.8%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이용에 적합하다는 79.3%~100.0%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래 사진과 같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이 있음에도 교환대나 세면대 등이 높이 설치되어 이용에 불편한 경우와 입구가 좁거나 장애물(봉)을 설치하여 진입을 아예 하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입구에 봉을 설치하여 진입할 수 없는 휴게시설



입구가 좁아 진입할 수 없는 임산부 휴게실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이 높이 설치된 휴게시설



공간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휴게시설

3. 소결

모든 구역을 자유롭게 진입할 수 없어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마트, 창고로 이용 중이거나 턱이 있어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용 화장실, 카트 등으로 막아 진입 할 수 조차 없는 출입구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일상속에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지역 내 마트는 장애인에겐 이러한 불편함을 주고 있어 기본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삶의 영위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용을 할 수 있더라도 건물구조의 이유로 관련 법 및 규정을 위반하고,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이루어져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

‘인간다운 삶’의 의미는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사회의 평등을 통하여 통합을 이루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평등한 사회참여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VI. 실태조사 모니터링의 문제점 및 한계

이번 대형마트 실태조사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승강기 안전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수치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던 것이 아닌 조사원이 해당 시설물을 접근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중심으로 실시 한 것으로서 주관적인 조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한 대면조사의 어려움이 존재하였고,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조사를 거부하여 설문에 협조받지 못하는 등 면밀하게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VII. 마무리

대형마트 실태조사는 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편의증진을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장애인들이 기초적인 소비활동을 향유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장애인의 소비활동은 욕구 해소를 위해 재화를 소모하는 기본적 권리임과 동시에, 그들의 생존활동, 행복지수 증가, 스트레스 해소의 연결이며, 사회성 등의 생활환경 변화의 의미를 가져다 준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실제 발생 되는 대형마트 이용의 불편함은 경기북부 장애인의 기본권리 자체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 당연한 권리의 실현으로서 모두가 함께 바라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

각한다. 그리고, 이 조사의 결과와 같은 사항들은 비단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 곳곳에서도 부적절한 구조를 가진 곳이 있을 것이라 본다.

그리하여, 본 기관에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그냥 보고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경기북부 내 대형마트의 실태를 실질적으로 공유하고, 직접적인 교육과 개선사항들에 대한 개선추구를 시행하고자 한다.

새로운 사업확장 등을 통해 그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성장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여 누구에게나 평등한 사회적가치로 갖추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마트의 리뉴얼 혹은 리모델링을 통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매장으로 탈바꿈되어, 국민 모두가 같이 기본적 욕구 충족을 통해 행복을 추구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1 경기북부장래인인권포럼

발 제

발 제

장애인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총괄팀장 박 현 희]

I. 들어가며

장애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에 대한 개념이 개인의 손상과 그에 대한 치료와 회복을 중심으로 두는 의료적인 접근에서 사회참여, 자립생활, 자기결정권 등을 중시하는 사회적 모델로 전환되고 있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방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은 1조 5,070억원이며, 983개의 활동지원기관, 98,483명의 이용장애인, 94,569명의 활동지원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활동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장애인이 탈시설을 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생존을 영위하고, 자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욕구에 의한 서비스제공자이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에서 있어 조력자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이기도 하다.

물론 때로는 인권침해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활동지원사는 단순한 보조자가 아닌 다양한 역할을 갖고 있는 공공서비스제공자이다.

물론 인권침해가 활동지원사 개인의 일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활동지원서비스제도가 갖고 있는 중요성과 활동지원제도가 사회 공공서비스임을 감안한다면 우리사회가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갈 방향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활동지원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한다.

장애인 학대사건은 행위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야하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기에, 우리사회의 책임인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목적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한다.

II.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개인위생, 식사, 옷 입기, 가사, 외출 등과 같은 일상생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이러한 활동에 대한 보조활동은 비공식적으로 가족들에 의해 제공되었지만,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협약, 자립생활모델, 그리고 최근 재활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활동보조서비스가 제도화됨에 따라 가족에 의한 지원이 감소하고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의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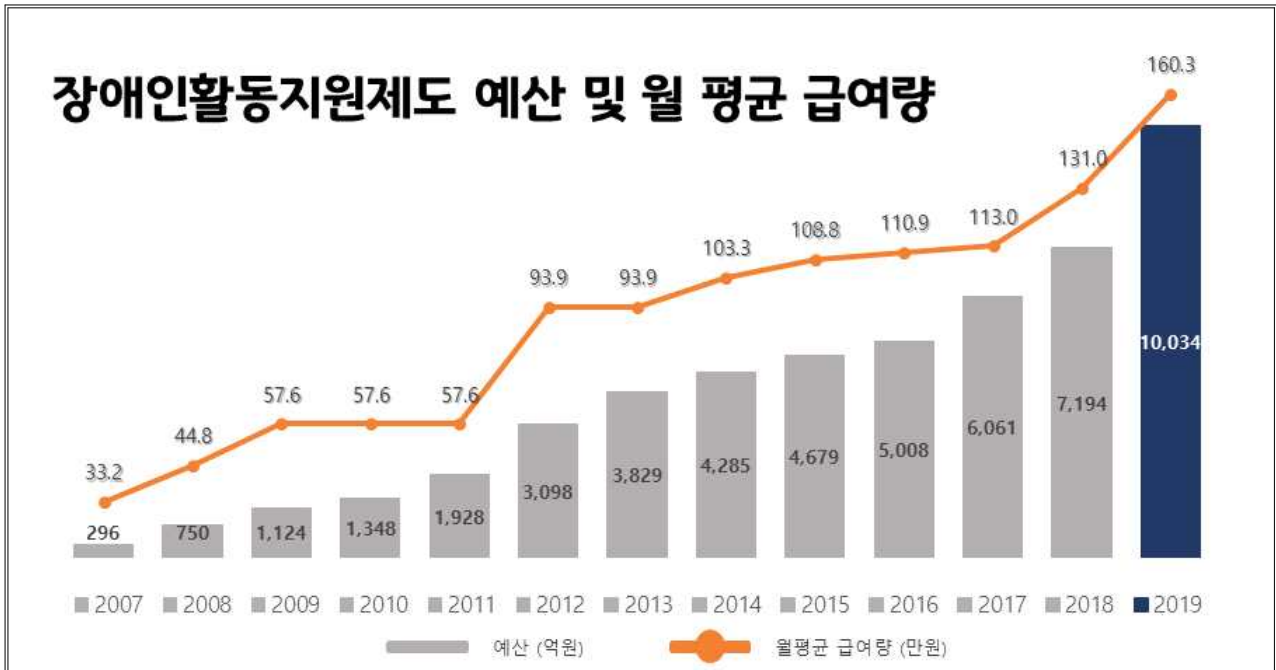
2007년 시작된 이제도는 최초 장애인활동보조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오다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개편되고 2013년 대상을 1급에서 1,2급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2015년 6월에 대상자를 3급까지 확대하였다

장애인활동법에는 활동지원사업의 목적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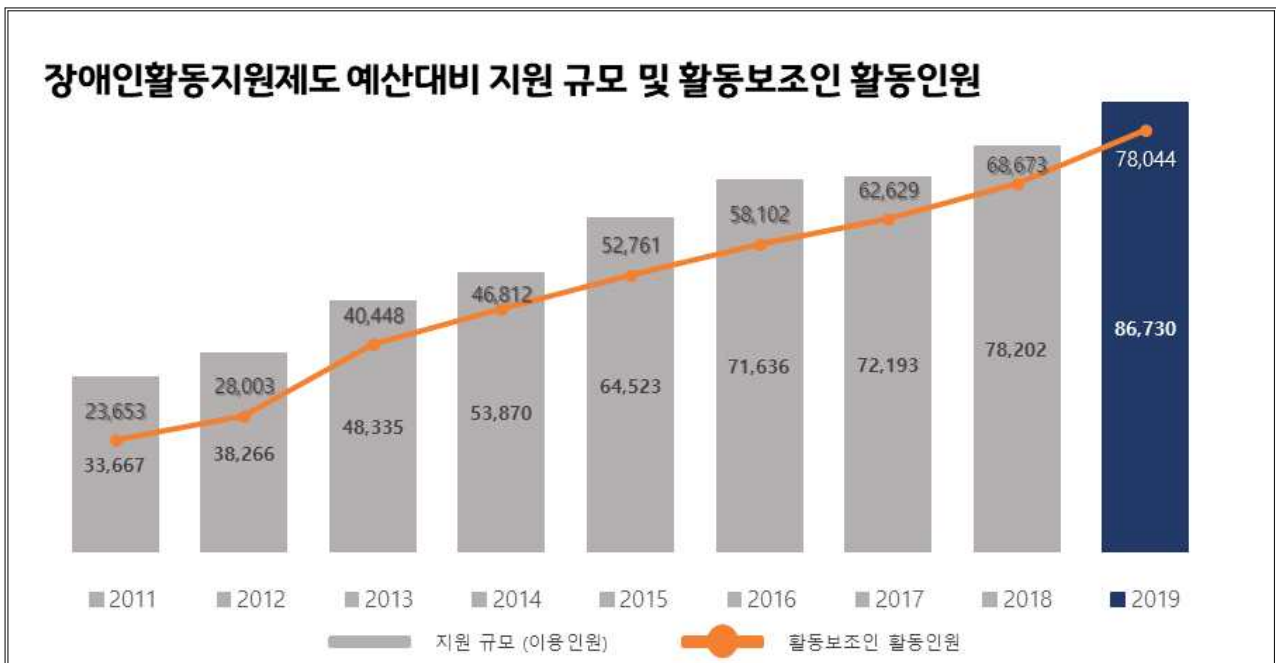
이전의 가족돌봄 또는 자원봉사자에 의한 지원과 달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통합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단순한 서비스제도를 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중요한 장애인의 권리로써 인식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켰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2. 활동지원서비스제도의 현황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예산은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된 2007년 296억원에서 2019년 10,034억원으로 월평균급여량은 2007년 33.2만원에서 2019년 160.3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2011년 46,502명에서 2019년 105,56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활동지원인력 또한 2011년 33,667명에서 2019년 86,73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수급자 현황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42,090명(39.9%)로 가장 많았으며, 자폐성장애 15,226명(14.4%), 지체장애 14,857명(14.1%), 뇌병변장애(13.9%), 시각장애 12,123명(11.5%)순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장애유형별

구분	계	장애유형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2011	46,502	10,606	8,383	297	8	12,798	8,775	4,621	266	436	17	264	24	7	-	47	
2012	50,200	11,097	9,143	322	5	14,396	9,157	5,344	256	455	18	253	19	8	-	50	
2013	60,435	11,648	9,439	361	52	19,651	9,874	7,430	641	971	29	225	24	9	1	80	
2014	64,906	11,831	9,716	379	70	21,979	10,205	8,428	740	1,191	27	215	23	9	1	92	
2015	72,212	12,344	10,199	404	141	25,603	11,120	9,574	1,034	1,347	35	251	23	9	6	122	
2016	79,926	12,823	10,685	438	197	29,645	11,979	10,789	1,383	1,477	39	280	24	10	5	152	
2017	86,926	13,232	11,044	476	284	33,128	12,744	12,141	1,668	1,638	46	297	20	13	14	181	
2018	94,496	13,570	11,471	519	344	37,060	13,481	13,553	2,066	1,856	46	276	22	14	18	200	
2019	105,569 (100.0)	14,857 (14.1)	12,123 (11.5)	612 (0.6)	477 (0.5)	42,090 (39.3)	14,702 (13.9)	15,226 (14.4)	2,607 (2.5)	2,190 (2.1)	50 (0.0)	295 (0.3)	26 (0.0)	15 (0.0)	28 (0.0)	271 (0.3)	
성별	남	65,278 (100.0)	9,133 (14.0)	7,147 (10.9)	339 (0.5)	321 (0.5)	24,428 (37.4)	8,607 (13.2)	12,691 (19.4)	1,156 (1.8)	1,118 (1.7)	23 (0.0)	148 (0.2)	16 (0.0)	7 (0.0)	10 (0.0)	134 (0.2)
	여	40,291 (100.0)	5,724 (14.2)	4,976 (12.4)	273 (0.7)	156 (0.4)	17,662 (43.8)	6,095 (15.1)	2,535 (6.3)	1,451 (3.6)	1,072 (2.7)	27 (0.1)	147 (0.4)	8 (0.0)	8 (0.0)	18 (0.0)	137 (0.3)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	104,746 (100.0)	14,556 (13.9)	12,038 (11.5)	595 (0.6)	432 (0.4)	42,090 (40.2)	14,366 (13.7)	15,226 (14.5)	2,607 (2.5)	2,180 (2.1)	50 (0.0)	293 (0.3)	25 (0.0)	15 (0.0)	25 (0.0)	248 (0.2)
	심하지 않은 장애인	823 (100.0)	301 (36.6)	85 (10.3)	17 (2.1)	45 (5.5)	- (-)	336 (40.8)	- (-)	- (-)	10 (1.2)	- (-)	2 (0.2)	1 (0.1)	- (-)	3 (0.4)	23 (2.8)

※ 성별로는 남성이 65,278명으로 여성 40,291명에 비해 24,987명 많음

※ 장애정도별로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104,746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약 99.2%를 차지함

Ⅲ. 활동지원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1. 부정수급 사례

이용인과 활동지원사 상호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권익옹호기관이 학대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용인의 장애취약성을 이용한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권익옹호기관은 이를

학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다.

장애인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장애인의 금전, 가치 있는 물건 등 재산을 힘으로 빼앗거나 장애인을 속여서 스스로 내어 놓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행위로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지급된 수급비, 월급 등을 행위자가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활동지원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제대로 지원되고 있지 아니한 부정수급을 경제적 착취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부정수급의 피해자가 국가인가 장애당사자인가의 논의도 있었다.

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사례중 이용인이 장애특성으로 인해 실제 본인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 지는 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특히 무연고 지적 중증 장애인의 경우 상호합의에 의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권익옹호기관은 당사자에게 주어진 사회서비스가 정적하게 제공되지 않거나 이용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고 활동지원사가 이에 대한 부정수입을 얻는 부정수급에 대해 장애인의 장애취약성을 이용한 경제적 착취로 보았다.

다음의 사례들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부정수급 사례이지만 경제적 착취로 판정한 사례들이다.

1) 활동지원사가 공동생활가정 시설장과 특수관계인인 사례

- 피해자 : 지적장애6인/중증/남성/무연고
- 행위자 : 시설장/ 활동지원사3인

[피해내용]

장애인 거주시설은 활동지원서비스제도 이용이 불가하지만 공동생활가정은 이용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부정수급 사례

시설장에 의한 학대사례가 접수되어 현장조사과정에서 활동지원서비스가 신청된 것을 파악하고 이용인에게 확인하였으나 활동지원제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거주시설 이용인 6인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가 신청되었고 매칭된 활동지원사는 공교롭게도 시설장의 부인, 직원의 부인, 시설의 운영위원

활동지원이용내역에 아침9시부터 저녁6시까지 이용하였다고 기록됨

직원들의 출근시간은 아침9시이라고 하면서도 활동지원을 위해 아침9시전에 활동지원사 집이나 근처 카페로 이동 지원하였다고 주장

CCTV확인 결과 시설 밖으로 외출한 기록 없었으며 활동지원사가 시설을 방문하였으나 활

동지원서비스 제공하지 않음 확인

[확대판정]

경제적 착취로 판단

[지원내용]

행정청에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 및 자격정지 요청

위 사례는 중개기관이 이용인과 활동지원사를 매칭을 함에 있어 기관의 판단에 의한 매칭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알선, 유인등을 통해 매칭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장애인활동법에는 중개기관과 활동지원인력만을 알선, 유인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에 의한 알선, 유인은 처벌이 어렵다.

2) 3남매에 대한 활동지원 사례

- 피해자 : 3남매/ 고령의 부모/ 활동지원사에 대한 의존도 매우 높음
- 행위자 : 활동지원사 3인

[피해내용]

30~40대의 지적장애 3남매

부모는 모두 70대로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끊고 지냄

지역에서 3남매 어릴적부터 적절하게 양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여 사례관리대상

부모는 공적인 서비스를 모두 거부

지역장애인부모단체의 노력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사가 아침에 3남매를 원룸으로 이동지원하고 낮시간을 보낸 후 저녁에 가정으로 이동지원

활동지원서비스는 1:1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활동지원사 3인이 시간을 분할하여 1인이 3남매를 지원

3남매의 활동지원시간이 적어 하루 8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 있음

[확대유형]

이에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잠재위험으로 판정

[지원내용]

행정청에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 요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요청

2. 경제적착취 사례

1) 활동지원사가 통장에서 고액 인출한 사례

-피해자 : 지적장애/ 부부/ 무연고

-행위자 : 활동지원사

[피해내역]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기간 거주 후 시설내 체험홈을 통해 자립
 보호작업장에 근무하고 있음
 부부가 통장거래 등 금융관련 업무를 해본적이 없음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보호작업장의 급여 등의 통장에서 활동지원사 명의로 3회에 걸쳐
 15,002,000원 송금
 활동지원사는 처음에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10일 후 입금함
 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하기 전 보호작업장에서 통장에 대한 확인 요청 후
 10,000,000원 입금함

[학대유형]

피해금액을 모두 상환하였으나 장애의 취약성을 이용한 경제적 착취로 판정

[지원내용]

경제적 착취에 대해 경찰 고발. 현재 수사 중

2) 활동지원사가 통장에서 고액 인출한 사례2

-피해자 : 지적장애/ 무연고/ 장애인일자리참여

-행위자 : 활동지원사 (위 사례와 동일인)

[피해내용]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기간 거주 후 시설내 체험홈을 통해 자립
 장애인일자리참여로 자립 후 한 직장에 근무 중
 피해자는 본인이 관리 가능하나 활동지원사가 통장을 관리해주겠다고 하여 맡길 수 밖에 없었
 다고 함.
 생계급여, 장애인연금등이 예금되어 있는 통장에서 3,950,000원을 활동지원사에게 송금
 이후 3,000,000원은 2일 후 입금

[학대유형]

피해금액을 일부 상환하였으나 장애의 취약성을 이용한 경제적 착취로 판정

[지원내용]

경제적 착취에 대해 경찰 고발. 현재 수사 중

3) 활동지원사가 통장에서 부적절한 금액을 인출한 사례

- 피해자 : 지적장애/ 무연고/ 장애인일자리참여
- 행위자 : 활동지원사

[피해내용]

이용인의 통장은 집안에 놓고 지내지만 실질 관리는 활동지원사가 함
 피해자에게는 용돈통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일주일에 10,000원을 입금
 물품구매 관련하여 저렴하게 구입한다는 이유를 들어 인터넷 카페, 중고거래 등으로 구입
 하여 실제 물품구매 내역 확인 어려움
 물품 구매시에도 동행하지 않고 활동지원사가 일방적으로 구입해오고 통장에서 지출된 금
 액을 인출
 통장 인출금액에 대해 소명을 요청했으나 소명되지 않는 다수의 금액발견

[학대유형]

장애의 취약성을 이용한 경제적 착취로 판정

[지원내용]

경제적 착취에 대해 경찰 고발. 현재 수사 중

4) 활동지원사에 의한 노동력 착취 사례

- 피해자 : 시각장애/ 무연고/
- 행위자 : 활동지원사

[피해내용]

피해자와 행위자는 오랜 친분이 있던 사이임
 피해자가 시설에 거주하던 중 퇴소를 하여 행위자와 동거를 시작
 행위자가 활동지원사로 중개기관에 등록하였으나 실제 활동지원업무는 수행하지 않음
 오히려 피해자는 행위자 가정의 가사노동을 하게됨
 시각장애라는 취약성을 이용하여 통장관리도 활동지원사가 하여 수급비를 임의사용

[학대유형]

장애의 취약성을 이용한 경제적 착취로 판정

[지원내용]

합의중재를 통해 700만원 합의금으로 수령 후 자립

5) 활동지원사가 급여관리자를 겸하고 있는 사례

<p>-피해자 : 지적장애 중증/ 남성/ 무연고 -행위자 : 활동지원사 및 급여관리자</p> <p>[피해내용]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고 있던 피해자는 탈시설 자립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장의 이모와 동거. 무연고 지적장애인은 동사무소에 의해 행위자가 급여관리자로 지정되고 급여관리자는 활동지원사를 겸직. 피해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 이에 탈시설 의사도 자립에 대한 욕구도 판단할 수 없었음. 활동지원사가 임대료로 매달 20만원을 인출. 수급비에서 생활비를 함께 사용</p> <p>[학대유형] 동거인으로 지내고 있어 피해내역을 특정하기 어려웠음. 그러나 이러한 형태로 지내는 것은 잠재적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p> <p>[지원내용] 행정청에 공공후견임 선임을 요청</p>
--

3. 정서적 학대 사례

1) 정서적 학대

<p>-피해자 : 지적장애/ 무연고/ 여성/무연고 -행위자 : 활동지원사 C씨</p> <p>[피해내용] 활동지원사가 정리해 놓은 옷 등을 피해자가 서랍에서 꺼내서 방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옷걸이를 들어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그과정에서 손목에 멍이 듦 활동지원사는 때리려는 의도는 아니였고 옷걸이를 들어 야단치는 과정에서 손에 맞았다고 함 피해자는 활동지원사 교체보다는 사과를 요청</p> <p>[학대유형] 위협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p> <p>[지원내용] 활동지원사에 대한 사과 등 중재</p>

2) 활동지원사에 의한 자기결정권 침해

-피해자 : 지적장애/ 중증/ 여성/무연고
-행위자 : 활동지원사

[피해내용]

지인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지원하는 과정 활동지원사에 의한 합의 강요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성추행 가해자(부모)의 요청에 따라 활동지원사가 용서해주
라고 하여 합의서 작성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확인하여 법원에 의견
서 제출

[학대유형]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서적학대로 판정

[지원내용]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 교체 요청

4.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는 자기결정권 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인 활동지원사간에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례들과 관련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피해자의 주장은 있지만 녹취도, CCTV도, 목격자도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행위자가 부인하
면 실제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아래는 저희 기관에 신고되었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던 사례들이다.

1) 활동지원사의 욕설, 비하 발언 등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사례1

-피해자 : 뇌병변장애/ 중증/ 남성
-행위자 : 활동지원사

[피해자 주장]

- 피해자에게 곰탱이라고 하고 “너 이것밖에 못하냐?” 라고 하고 말 끝에 자주 “병*, 씨
*” 이라고 함.
- 피해자가 밖에 나가고 싶다고 했을 때 활동지원사가 나가기 싫다고 만나감

- 언젠가 활동지원사가 밖에 나가기 싫다고 해서 피해자 혼자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활동지원사가 같이 동행하지 않으며 바우처 카드를 찍음
- 피해자가 교회에 가고 싶은데 활동보조인은 교회를 왜 가냐고 교회에 가면 밥이 나오느냐 하면서 피해자를 힘들게 함.
- 내가 활동지원사에게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함
- 오래전 탈시설하여 활동지원사 집에서 동거인으로 있었음

[활동지원사 주장]

욕설 등에 대해 부인하고 오히려 장애인이 욕설을 했다고 주장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 수 있냐고 함

[지원내용]

분리조치를 위해 다른 체험홈 입주 지원

2) 활동지원사의 욕설, 비하 발언 등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사례2

- 피해자 : 지적/ 중증/ 여성/무연고
- 행위자 : 활동지원사

[피해자 주장]

- 활동보조 선생님이 “자기자식이었으면 반죽였다” 라고 말하고 “방에 데려가서 때렸다” 는 문자가 음
- 때렸다는 것이 어떻게 때린것이나고 문자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함
- 중개기관에 이야기를 하면 혼나기 때문에 하지 말아 달라고 함
- 다음에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녹음을 하도록 안내

[활동지원사 주장]

-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듣나면서 화를 냄
- 당사자 평소에 비아냥거리면서 열받게 하고 비웃는다고 함

[지원내용]

- 이용인 활동지원사와 잘 지내기로 했다며 종결 요청
- 중개기관에 모니터링 강화 요청

3) 신체적 학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사례

- 피해자 : 지적장애 중증/ 남성/ 무연고
- 행위자 : 활동지원사

[피해내용]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고 있던 피해자는 탈시설 자립이라는 명목으로 활동지원사와 동거. 피해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 신고내용은 활동지원사가 살이 썬다는 이유로 적정량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으나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음.

[학대유형]

식사제공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나 이러한 상태로 지내는 것은 잠재적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지원내용]

행정청에 공공후견임 선임을 요청하였으나 행정청에서 시설입소 결정

4) 자기결정권 침해사례

- 피해자 : 지적장애/ 부부/
- 행위자 : 활동지원사

[확인내용]

지적장애인 부부로 구성된 가정에서 모든 결정권이 활동지원사에게 있는 경우 건강을 위한다는 이유로 고가의 한약과 방문판매 영양제를 구입 활동지원사가 좋은 거라고 했다고 함 복용여부 등 당사자 사용에 대한 확인 불가 구입내역 상으로 과도한 금액지출과 구입이라고 생각되나 이를 학대로 판정하기 어려움

IV.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수급자는 활동지원중개기관을 선택한 후 활동지원기관에 급여이용을 신청하면, 중개기관은 본인의 희망, 현재의 곤란한 상태 등을 활동지원급여 수요조사 카드에 따라 파악하여 수급자 및 가족과 함께 구체적인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한 후 활동지원급여 계약을 체결하며, 수급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간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동의서를 3부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의 가정환경,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활동지원인력 배치 상황 및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 내용과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인력을 매칭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 대부분은 이런 표준적인 절차가 아닌 활동지원사와 수급자간 특수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이 활동지원사를 알선한 사례, 활동지원사와 수급자가 서로 알고 있는 사이로 매칭을 요청한 사례 등 활동중개기관이 급여제공에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방 할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장애인활동법 제22조와 제30조는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인력에게만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지원기관은 소개·알선·유인의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거부하고 절차에 의한 급여제공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활동지원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인력만으로 규정된 소개·알선·유인의 행위의 주체를 넓게 규정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무연고 지적 중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지역에서 다양한 확대사례를 마주하고 지원하면서 활동지원인력의 업무범위는 어디 까지 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

분하고 있으며 활동보조는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사회활동 지원을 살펴보면 외출시 동행하여 물품구매,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동행으로 세부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실제 무연고 지적 중증장애인이 이용자인 경우 활동지원사에 의해 통장관리 등의 업무가 활동지원사의 업무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에 설명한 사례들의 대부분 피해자들이 지적 중증 무연고 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은 장애인 학대 사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자립생활, 탈시설의 시대적 정책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에 홀로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는 무연고 지적장애인의 수급비 등 급여관리에 대한 사회적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급여관리자라는 제도를 두고는 있지만 이 또한 공적영역인 아니 개인에게 장애인의 급여관리를 맡기는 것은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공공후견인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자기결정권 침해의 우려, 지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활동지원사에게 이용인의 경제권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활동지원기관은 무연고 이용인의 경우 통장관리 등에대한 부분을 이용인과 활동지원인력, 지원기관이 함께 협의하고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청은 지적 무연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 및 전문성 강화

1)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요건 강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30조는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자격취소의 요건으로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

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활동지원기관의 자격정지 요건과 동일하게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수급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규정하고 있다.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1.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정지 요건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규정이 추가 될 필요가 있다.

2) 활동지원인력의 교육 강화

활동지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40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40시간의 교육중 자립생활과 인간중심계획의 이해 3시간, 인권과학대 2시간만이 인권과 자립생활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은 160시간의 교육과 80시간의 실습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경우 지원기관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교육의 내용은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활동법의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사에게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과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시간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장애인 차별, 학대, 인권 등 이용장애인에 대한 존중과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교육내용의 세분화 및 교육시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4. 활동지원기관의 역할 강화

1) 모니터링 강화 필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의하면 활동지원지원기관은 반기별 1회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와 서비스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활동지원기관은 전담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활동지원인력이 많아 모니터링이 충실이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활동지원기관의 모니터링 강화는 필요하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은 실제 위의 사례들처럼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인 활동지원사의 이야기만이 진실처럼 이야기되고 이를 통해 오히려 장애인이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간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인권침해 사례가 접수되어도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는 장애인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사의 이야기만을 사실로 확인하고 중재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자기방어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

2) 인권침해 발생시 피해자 회복을 위한 조치 명시

활동지원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원기관에서는 분리조치에 대해 긴급하게 활동지원인력 매칭이 불가하여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지원기관의 의무에 활동지원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시 긴급분리 후 대체 인력

즉시 제공과 같은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취소의 요건 강화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 제24조 1항 6호에서는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활동지원 인력이나 그 밖의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수급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상 살인,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 훼손, 모욕,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을 포함에 대한 규정이 추가 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와 관련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행정청의 관리감독 강화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며 장애인활동지원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있는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 내역과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자격취소등의 현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자료가 부존재한다는 짧은 답변만을 보내왔다.

이처럼 2021년 6월현재 수급자수가 121,861명에 달하고 이용자수는 98,483명이고, 활동지원기관 수는 983개에 달하고 2021년 예산이 15,071억원에 달하는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안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청은 단순히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갖고 있는 공적인 서비스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자립지원을 위한 목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V. 마치며

권익옹호기관 상담원들은 지역에서 다양한 학대사례를 접하고 자립지원을 하면서 활동지원제도의 중요성을 그리고 어떤 활동지원사를 만나게 되는 지에 따라 이용인의 삶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활동지원제도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적서비스로서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이용인과 활동지원인력 모두에게 인권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소중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장애인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에 부쳐

우 주 형 /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장

I. 장애인 학대의 또 하나의 현장을 접하며...

2007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시작되고, 2011년에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이 제도화되면서 활동지원 수급자 수가 2022년엔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대상자 10만 7천명 추산). 이는 심한 장애에 속하는 중증장애인의 2/3 정도가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수치에 해당한다.

이제 활동지원급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 10년을 맞이하여 현재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지금까지는 활동지원제도의 쟁점 사항으로 공식적인 논의가 제기 되지 않았던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사)에 의한 장애인 학대 예방 문제를 논의함은 늦었지만 필요한 문제제기이다. 이러한 장애인 학대가 현장에서는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존재해왔던 것이고, 서비스이용자인 장애인당사자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표면화하여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활동지원 제도의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른 적시의 매칭이 어렵다는 구조적인 이 유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학대의 피해가 발생하여도 고스란히 이용자인 장애인 피해자가 짊어져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이는 명백한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라고 규정 하지 아니할 수 없다.

II. 누구를 위한 활동지원제도인가?

(1) 활동지원사의 이용자 장애인 학대 사례를 접하면서 활동지원제도의 핵심인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의 본질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서비스로서 이용자인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간에 이루어지는 유상 계약 관계로 볼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중개기관인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수급자인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등 3자간에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동의서를 작성하여 진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활동지원사는 수급자인 장애인이용자의 희망과 요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지원해주는 인력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활동보조서비스의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이므로 활동지원사는 서비스 목적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활동지원사가 수행하는 업무(급여)가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및 기타 제공서비스 어디에 해당하더라도 **그 업무의 본질은 장애인이용자의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2) **자립생활의 핵심은 장애인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의 존중**이다. 활동지원사가 업무 수행시 수급자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무시하고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을 하여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한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한 업무행위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위반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즉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고 본다.

(3) 발제자가 제시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은 장애인 학대 행위를 한 활동지원사들이 활동지원제도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성질을 잘 알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서비스이용자가 중증지적장애인일 경우 소통의 문제 등으로 자기결정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장애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고의로 학대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제도가 오히려 장애인에게 피해를 주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 스티그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서비스 중단을 할 수 없어 지속되는 것이라면 이는 장애인당사자에게 반인권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활동지원사의 학대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예방 조치 등은 마땅히 강구되어야 한다.**

(4) 발제자가 발표한 사례를 중심으로 보면, 부정수급 2건, 경제적 착취 5건, 정서적 학대 2건, 사실 확인 불가능 4건 등 총 13건으로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 11건, 시각장애 1건, 뇌병변장애 1건으로 지적장애인의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엔 장애의 취약성을 이용한 경제적 착취의 사례이고,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엔 욕설, 비하 발언 등의 폭력과 모욕 등의 학대 사례이다. 지적장애인은 다양한 학대 유형에 모두 해당될 수 있어 **가장 취약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 수 있다.

사실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한 활동지원사의 학대 또는 괴롭힘 사례는 피해자가 주장할 수 있으나 입증하기가 곤란한 난점이 있어 활동지원사가 부인하면 문제삼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대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배상이 어렵다면 **분리조치**가 최선이지만 이 역시 현실적인 고려사항들이 있음으로 인해 쉽지 않을 수 있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만, 아울러 사후 구제조치로서 분리조치를 위한 중개기관의 대안이 평소에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갈 곳 없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임시 거소로서 **쉼터나 체험홈** 등을 적극 활용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사례를 보면, 사후조치로서 행정청에게 공공후견인 선임을 요청하였으나 시설입소로 행정청에서 결정한 것이 2건이나 있었다. 이는 행정청의 무사안일한 처사로 보여지며, 여전히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무지함에서 이용이 안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본다. **공공후견인(특히 특정후견인)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특정후견인제도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줄 수 있는 후견인제도의 하나로서 후견법인의 선임 등을 활용한다

면 피후견인인 지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Ⅲ. 향후 대책은?

(1) 발제자는 개선방안으로서 크게 행정청의 관리감독 강화, 활동지원기관의 역할 강화,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 및 전문성 강화, 무연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간 행정청은 부정수급 등의 문제에 대해 벌칙규정은 두었으나, 실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직무유기이다. 이에 대한 주무부서의 업무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2) 발제자가 제안한 중개기관인 활동지원기관의 모니터링 강화에 찬동한다. 현재 활동지원기관은 전담인력이 담당하는 활동지원인력이 많아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모니터링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모니터링은 상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모니터링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인력은 장애인 피해자의 상담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의 피해를 조사하고 대체 인력 교체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3) 발제자가 제안하였듯이 현행법에는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 학대 등의 피해가 발생시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부재하여 긴급 분리조치, 대체인력 즉시 제공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벌칙조항으로 되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신체 폭행 및 상해, 성폭행 및 성희롱, 유기 등 기본적 보호 소홀행위에 국한하지 말고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까지 확대하여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발제자가 언급한 것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4) 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사의 학대행위는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사례는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가장 많은 사례가 통장관리와 같은 금전 관리의 문제이다. 현행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성년후견제에 대해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있지만, 포괄적 대리권이 부여되는 성년후견인의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공공후견인으로서 많이 이용하는 특정후견인 선임의 경우엔 특정 업무로 제한되므로 사실상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것이다.

IV.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애인이용자와 활동지원사는 유사노동계약관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활동지원사는 돌봄노동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활동지원사의 활동보조업무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까지 돌봐야 하는 **특수한 돌봄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급자인 장애인의 특성을 잘 알고 서로 마음이 맞는 활동지원사를 만날 수 있으면 장애인이용자 입장에서는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활동지원사의 수급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으며, 향간에는 활동지원사끼리 기피대상인 이용자 명단도 공유된다고 한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일수록 매칭이 어렵다.

또한 시간제 근로인 활동보조는 일정한 시간 이상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는 경제적 수입에 큰 도움이 안되어 부정수급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 문제가 얽혀서 발생하는 활동지원사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구제를 위한 최선의 대책은 무엇일까???

활동지원사의 성정 문제도 있지만, **최초로 활동지원사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이에 대한 교육 강화가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활동지원기관의 상시 모니터링과 보수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행법의 미비점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차제에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진정 바람직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인권 보호의 제도로써 새롭게 재설계되었으면 하는 소망도 가져본다.

주객전도(主客顛倒)된 활동지원서비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박 현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외협력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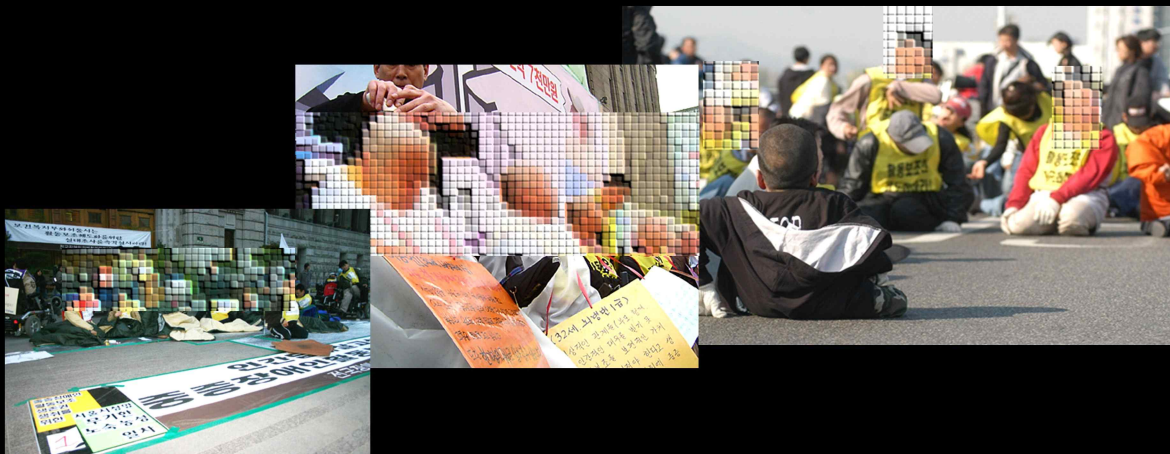
주객전도(主客顛倒)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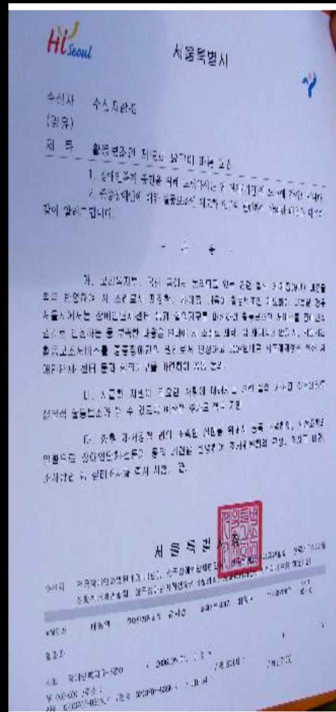
활동지원서비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박 현 / 대외협력실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Korea Council of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활동지원제도는 시작은 2006년 그해 겨울,
당사자들의 처절한 투쟁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 <활동보조인 제도화 요구에 따른 합의 (2006. 5. 1)>**
- 1)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의 제, 개정(9월)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시 조례로서 제정함.
 - 제, 개정 내용이 활동보조인 제도화에 미흡할 경우 서울시에서는 장애인단체, 센터 등과 협의기구를 마련하여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는 등 부족한 내용을 연내에 시 조례로 제정.
 - 법 제, 개정이 안될시, 서울시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2007년 내로 시 조례제정을 위해 장애인단체, 센터 등과 협의기구를 마련하여 공동 논의.
 - 2) 시급히 자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의 제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 활동보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적극 지원.
 - 3) 향후 제개정될 법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 공동 노력하되, 사전조치의 일환으로 장애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표 마련, 조사방법 등 실제 조사를 즉시 시행.

이후 서울시를 시작으로 대구, 경남, 경기, 인천, 부산 등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투쟁이 확산되어 지자체로부터 제도화 약속을 연이어 받게 된다. 이에 부담을 느낀 복지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장애계에 요구에 민관합동 TF를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민관합동 TF는 파행을 계속하며 이후 일방적인 정부입장만의 활동지원시범사업 시행 내용을 발표하게 되는데..

- 사업개요**
- 기간 : 2007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후에도 사업 계속)
 - 2007년 예산 : 410억 (국고지원 약286억원, 국고보조율 서울50%, 각지방 70% 또는 80%).
 - 서비스 대상 (임의의 사업목표량) : 1만6천명, 활동보조인 8천명.
 - 서비스 신청 : 만6세이상~만65세미만 장애인1급 장애인에 한함.
 - 인정 절차 : 서비스 신청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정한 '인정기준표'에 따라 방문 조사.
 - 서비스 시간관정 : 인정기준표에 의해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20~80시간 제공.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경우 월20~40시간 제공.
 - 서비스 내용 :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제공.
 - 서비스 단가 : 시간당 7천원.
 - 장애인 본인부담 : 가구소득기준 기초수급 및 최저생계비 120%이내는 시간당 10%, 월 최대 2만원. 최저생계비 120% 초과시 시간당 20%, 월 최대 4만원, 서비스 이용료 부과.
 - 전달체계 : 시군구별로 사업기관을 2개소씩 지정 (사업경험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우선 지정).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은 시도별 2개소씩 지정.
 - 사업기관 운영 : 사업수익금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 (서비스 단가에서 활동보조인 임금지출분 이외의 부분과 장애인 본인부담금 등에서 수익 창출).
 - 활동보조인 자격 :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 중에서 소정의 연수를 거친 자.
 - 활동보조인 교육 : 연간60시간 이상 (교육기관에서 40시간, 사업기관에서 20시간).
 - 활동보조인 임금 : 활동보조인 시간당 임금은 7천원의 75%이상으로 사업기관에서 결정.

2007년 1월 23명의 중증장애인들이 23일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단식 투쟁으로 복지부는
사업시행 내용을 바꾸게 되는데.....

<p>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07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후에도 사업 계속) ◦ 2007년 예산 : 410억 (국고지원 약286억원. 국고보조율 서울50%, 각지방 70% 또는 80%). ◦ 서비스 대상 (임의의 사업목표량) : 1만6천명. 활동보조인 8천명. ◦ 인정 절차 : 서비스 신청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정한 '인정기준표'에 따라 방문 조사. ◦ 서비스 시간관정 : 인정기준표에 의해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20~80시간 제공.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경우 월20~40시간 제공. 최중증 장애인 특례적용(180시간) ◦ 서비스 내용 :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제공. ◦ 서비스 단가 : 시간당 7천원. ◦ 장애인 본인부담 : 가구소득기준 기초수급 및 최저생계비 120%이내는 시간당 10%, 월 최대 2만원. 최저생계비 120% 초과시 시간당 20%, 월 최대 4만원, 서비스 이용료 부과. ◦ 전달체계 : 시군구별로 사업기관을 2개소씩 지정 (사업경험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우선 지정).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은 시도별 2개소씩 지정. ◦ 사업기관 운영 : 사업수익금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 (서비스 단가에서 활동보조인 임금지출분 이외의 부분과 장애인 본인부담금 등에서 수익 창출). ◦ 활동보조인 자격 :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 중에서 소정의 연수를 거친 자. ◦ 활동보조인 교육 : 연간60시간 이수 (교육기관에서 40시간, 사업기관에서 20시간). ◦ 활동보조인 임금 : 활동보조인 시간당 임금은 7천원의 75%이상으로 사업기관에서 결정.
--

이후 2010년 시간 제한에 대한 장애계에 강한 항의로 각 등급별로 시간이 추가되는데..

- 1등급 80만원(100시간)
- 2등급 64만원(80시간)
- 3등급 48만원(60시간)
- 4등급 32만원(40시간)

* 독거특례(최중증) : 64만원(1등급 추가하면 180시간). 16만원 추가지원 되었지만, 실제 독거특례를 지원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2006년 중증장애인들이 서울시청 앞 노숙농성과 한강다리 기어가는 투쟁, 국가인권위원회 23일간 단식농성 등 자신에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은 한달에 80시간(평균) 활동지원 보장해주는 시혜적 정책으로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돌려 주었다.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제도는 장애등급 재판정이라는 독소조항을 내 세워고 척박한 장애인들의 삶을 옥죄었다.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지원제도는 그 전 시범사업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이었으며 활동지원제도 수급자들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신규 신청자들에게 장애등급 재판정을 의무화할뿐 아니라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3년에 한번씩 등급심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면서 활동지원을 권리로서 보장하겠다던 정부 입장이 몇 해 남짓 지나 말을 완전히 뒤 집는 행태를 보이게 된다.

(자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개선방안, 보사연 김성희 외 2012)

표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의 전면 개편에 따른 주요 내용 비교표

구분	활동보조지원사업(07.4~'11.9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11.10월~)
신청 자격	○ 만 6세~만 65세 미만 1급 장애인	○ 만 6세~만 65세 미만 1급 장애인
지원대상	○ 1급 중증장애인 3만명	○ 1급 중증장애인 5만명
급여 내용	○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긴급활동지원(부득이한 경우 한시적 급여 제공)
급여량	○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1등급 80만원(100시간) - 2등급 64만원(80시간) - 3등급 48만원(60시간) - 4등급 32만원(40시간) ○ 독거특례: 64만원, 16만원 추가 지원	○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차등 지원) - 1등급 86만원(103시간) - 2등급 69만원(83시간) - 3등급 52만원(63시간) - 4등급 35만원(42시간) ○ 추가 급여 - 독거: 최중증 664천원(80시간), 중증 166천원(20시간) - 출산 664천원(80시간) - 자립준비 166천원(20시간) - 취약가구, 학교·직장 생활 83천원(10시간)
급여규모	○ 월 평균 58만원	○ 월 평균 69만원
소요재정	○ 1,348억원('10년)	○ 1,928억원('11년) * 활동보조(1~9월) 1,151억원 활동지원(10~12월) 777억원
대상자 선정	○ (방문조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 (기준) 심신상태 등 고려 ○ (선정) 특별자치도·시·군·구	○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 ○ (심의) 특별자치도·시·군·구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 - 직장·학교 생활 등 복지욕구 고려 추가 선정 가능 ○ (선정) 특별자치도·시·군·구
시행 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관리운영기관 - 보건복지정 보개발원	○ 보건복지부, 지자체 ○ 관리운영기관 - 보건복지정 보개발원, 국민연금공단

자료: 1) 보건복지부(2011),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료를 수정·보완하여 활용

그리고, 그렇게 장애인들은 죽어갔다.



故 김주영



故 송국현



故 오지석

그러던 동안 한국장애일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뇌병변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의 장애인 단체들은 광화문 지하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 를 위한 천막농성은 정권이 3번 바뀌던 2017년 8월28일 농성 1842일만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을 방문해 장애등급제 희생자들을 조문하며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하는 입장을 발표한 후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약속한다.



일상생활지원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 자격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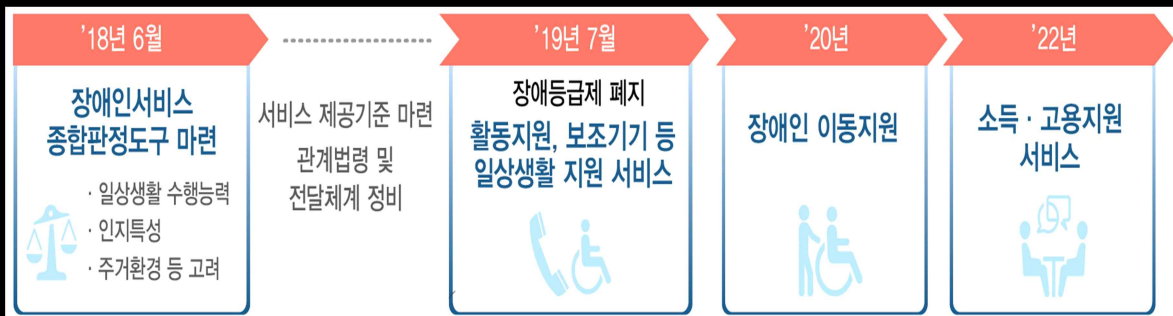
소득·고용지원

(장애연금 지급,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으로,

종합조사를

확대 실시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그러나 여기서 고민해야 할 것은 활동지원제도가 생긴 이래로 한번도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거나 감안(?)같은 건 없었다. 철저히 자본과 행정관료주의에 편집되고 재단되었던 제도이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활동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93호, 2020. 12.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9.>

심지어 활동지원법률조항에도 장애인에 결정권과 자립생활에 대해 권리라는 내용도 목적에는 없다.

2021년 장애인 3대 복지 예산

보건복지부의 3대 장애인지출예산사업 추이로 본 장애인지출예산 구성의 변화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증가율 ('15~'21)
		총계	억원	18,816	19,652	20,670	22,213	27,326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장애인정책 3대 사업	억원	17,101	17,755	18,744	20,155	24,731	29,840	33,447	11.8%
	%	90.9	90.4	90.7	90.7	90.5	91.1	91.2	
장애수당/연금	억원	6,931	6,911	6,927	7,306	8,495	9,180	9,664	5.7%
	%	36.8	35.2	33.5	32.9	31.1	28	26.4	
활동지원 제도	억원	5,496	6,130	6,973	7,902	11,065	15,107	14,761	83%
	%	29.2	31.2	33.7	35.6	40.5	46.1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억원	4,673	4,715	4,845	4,947	5,171	5,553	6,079	4.5%
	%	24.8	24	23.4	22.3	18.9	16.9	16.6	

※ 자료: 보건복지부(2020),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07년 시작한 활동지원서비스는 410억에서 시작해 2021년 현재 1조4백761억이며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3대 사업 중 가장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올바른 서비스를 진행할 만한 안전장치는 매우 미흡하다.

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의무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 역량 강화와 급여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소속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연 2회 이상)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방법, 제공기준 및 절차의 이해, 응급처치요령,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청렴교육 등
- (연 1회 이상)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재난대응 교육

■ 활동지원사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교재 개발 전까지 행정안전부 '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 등 활용
 ※ 국민안전교육 포털(kasem.safekorea.go.kr) - 일반교육교재 - 교육교재 - 일반용교재

2021년 활동지원 사업 지침을 보면 이러한 서비스들이 부정수급이라 정의된 것들은 많지만, 부정수급 방지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 기관에 보수교육 조항 정도이며 처벌도 환수 조치 등 기관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 때문에 실효성은 어느정도 될지는 사실 의문이다.

'2021년 활동지원_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07년 시작한 활동지원서비스는 410억에서 시작해 2021년 현재 1조4백761억이며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3대 사업 중 가장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올바른 서비스를 진행할 만한 안전장치는 매우 미흡하다.

라. 활동지원인력의 유의사항

- 성별·연령·종교 기타 건강상태 및 장애 등을 이유로 수급자를 차별해서는 아니됨
-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
- 허위결계 등 위법·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지급금에 이자 가산된 금액 환수(원인행위자), 활동지원기관 지정취소 및 1년 이내 재지정 금지, 활동지원인력 자격취소 및 취소 후 일정기간 자격취득 제한
 - 수급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할 경우
 - 급여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한 수급자의 가족과 다른 수급자의 가족이 바우처 카드를 교환하여 각자의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
 -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 간 담합하여 부당 결제를 하는 경우
 -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할 경우
- 활동지원인력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명시된 내용과 시간에 따라 급여를 제공(지각·조기 종료 금지)하여야 하고 수급자 동의 없이 급여의 내용이나 시간을 변경해서는 안 됨
 - ※ 활동지원인력이 임의로 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으며, 이용자와 합의(필요 시 활동지원기관 전담인력 협의)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수급자가 급여제공계약에서 벗어난 급여를 요청할 경우 또는 수급자(가족 포함)와의 갈등 발생 시 활동지원기관과 상의하여 결정

그리고 폭력과 관련해 사업규칙에서 돌봄서비스 일반적 원칙에서 제공기관에 대응이나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에서 '인권과 학대' 라는 2시간 교육이 배정된 것이 전부다.

'2021년 활동지원_사업안내(보건복지부)'

초기 활동지원 부정사례

사례 1.

시각장애인 A씨는 안마소 운영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다. 활동지원사 C씨에게 가사보조 서비스를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안마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 주라는 일(시간 결제를 더 해 줄테니)을 시키고 했는데, 당시 활동지원사는 '자신이 활동지원을 하러 왔지 이곳에 직원이 아니다'라며 지원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사례 2.

전신마비 B씨 장애인은 평사시 체위 변경 및 욕창 관리, 석션(Suction) 등의 서비스를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 외에 시간은 가족들의 허드레 일(가족들 옷가지 빨래, 마당청소 등)까지 시간을 더 주면서 해 달라고 하였다. 한동안 활동지원사가 해 주다가 이용인과 사이 나빠지며 이 일을 허위 결제로 신고하는 일이 있었다.

요즘 활동지원 부정사례

카드소지 사례 1.

- 활동지원사 A씨는 이용인 B씨가 지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카드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인이 이용인 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며 본인이 출근하기 위해 집에서 나올 때 서비스를 시작하고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서비스 종료를 하였다. 심야 시간대에도 몇 시간씩 결제를 진행함.

카드소지 사례 2.

- 활동지원사 D씨가 탈시설한 뇌병변 중증 발달장애인 E씨를 활동지원하면서 E씨에 바우처 시간이 많다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활동지원사로 등록시켜 놓고 낮에는 본인이 하고 식사와 빨래는 자신에 아내가 자신이 일이 있을 때는 자신의 아들이 지원하며 가족 일원이 한 사람에게 돌아가며 지원하는 일이 있었음.

이용인·활동보조인의 권리

이용인(장애인)의 권리

- 하나 장애인 자신의 결정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둘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활동보조인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셋 활동보조인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활동지원기관과 의논하여 서비스 내용을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넷 본인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활동보조인을 바꾸어줄 것을 활동지원기관에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다섯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여섯 서비스 이용 중에 본인의 신체, 물건, 식사 등에 있어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의 권리

- 하나 활동보조인은 이용인과 제공기관 간에 서면 또는 구두로 합의된 서비스만을 제공하며, 이용인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 것을 요구할 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둘 활동보조인은 제공기관이나 장애인으로부터 안전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활동보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이용인으로부터 필요한 일의 내용과 순서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셋 활동보조인은 이용인과 사전에 약속된 서비스 내용 이외, 별도로 일을 부여받거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넷 활동보조인은 노동법에 근거, 노동자로서 일체의 권리를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다섯 활동보조인은 자신의 고용인정을 위해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본같은 경우 10가지(십계명) 권리 약속을 명문화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서로 존중하며 활동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사와 장애인 대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활동지원 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이기 전에 장애인자립생활에 권리에 한 부분입니다.

활동지원사 분들의 높은 직업윤리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 주시기 당부 드림.

← 인천 00센터 사무실에 걸려 있는 안내글.

활동지원에 관한 원칙

-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고 자립생활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 한부분이다.
-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 권리이자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활동지원인과 중개기관이 침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
- 활동지원서비스는 공적 사회복지서비스인 만큼 국가가 이용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안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중개기관에게만 책임을 넘겨서는 안된다.
-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매뉴얼과 이 외에 지체, 감각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에 대한 매뉴얼을 차별화 시키고 그들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이어져야 한다.
-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정수급 및 폭력과 인권침해는 강력히 처벌되도록 법적 조치가 뒤 따라야 하며 그로 인해 2차 피해에 보호될 수 있는 다른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 활동지원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활동지원기관에 권한과 책임, 그리고 그에 합당한 지원(예산)이 있어야 하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책임과 처벌만 있고 권한과 특이 없는 것은 아무도 지키려 하지 않는다)

*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연령제한, 자부담 폐지, 인권침해 강력한 조항 마련 등)을 통해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지원제도로 자립 잡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 학대 예방·개선을 위한 녹음의 활용 및 활동지원기관의 역할강화 방안

나 동 환 /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근변호사

I.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개선을 위한 녹음의 활용방안

1. 활동지원사에 의한 이용인 학대예방을 위한 녹음 활용의 유용성

장애인 학대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취약성과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형성되는 의존적인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장애정도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누었을 경우, 모든 유형에서 대부분의 피해자(92.2%)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¹⁾ 활동지원사는 본래 스스로 일상·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 이용인에 대한 조력자로서 기능하지만, 권력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학대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특히, 가해 장소가 활동지원사와 이용인 둘 간의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다보니 활동지원사에 의한 학대는 쉽사리 은폐되고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현희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 총괄팀장의 발제문에서도 활동지원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중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음이 지적되고 있다.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형사적 제재인 형벌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응보의 기능뿐만 아니라, 타인이 받는 형벌을 보고 자신도 범죄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예방적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녹음기 설치를 통하여 학대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활동지원사들에 의한 이용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유용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녹음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활동지원사에 의한 학대의 가해 장

1) 송시현, “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결과와 앞으로의 과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국회의원 최혜영·국회의원 이종성·대한변호사협회·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0.10. 28. 발표), p.28.

소는 이용인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대화는 은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아 녹음기 설치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사생활 보호에 민감한 해외(영국·일본·프랑스·독일·호주·캐나다·아일랜드·미국 13개주 등)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아예 금지하거나, 녹음은 허용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데 법적 제한을 두는 경우도 많다.²⁾

다행히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은 녹음 및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청취의 금지대상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만을 규정하고 있어서(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자신이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① 활동지원사에 의한 학대사실의 증거를 수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② 피해자인 장애인 이용인 또는 타인의 제보에 의해 활동지원기관, 체험홈을 운영하는 법인 등이 뚜렷한 학대정황을 인지했을 경우에 한하여 ③ 피해자인 장애인 이용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거주공간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침해의 문제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활동지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사에게 학대사실에 대한 뚜렷한 정황이 제보됐을 경우에는 증거확보를 위해 업무공간(거주공간)에 녹음기를 설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사전설명 하는 것도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2.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최종증장애인이 피해자일 경우에 녹음의 증거활용 가능성

학대피해자인 장애인 이용인이 어느 정도 인지능력을 갖추고 있고 의사표현이 가능하며, 스스로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거나 녹음기 설치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위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표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최종증장애인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하다. 타인의 제보를 통해 학대정황을 인지한 활동지원기관, 체험홈을 운영하는 법인 등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로 증거확보의 수단으로 거주공간에 녹음기를 설치할 경우, 이는 그 자체로 불법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이를 바탕으로 활동지원사를 고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우리나라 법원은 비밀녹음을 통한 불법녹음파일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다소 제한적이다.

먼저 대법원은 사인이 수집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도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2) 한국경제신문, “영국·일본 녹음 되지만 제3자와 공유 안돼… 프랑스·독일·호주는 불법”,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7081196161> (2017.08.11.).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는 입장을 취한다.³⁾ 즉,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사인이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하였더라도, 그러한 증거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보다 크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법원은 불법녹음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해당 판례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증거능력의 인정범위를 정하고 있다.

일례로, 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가 생후 10개월 된 피해 아동의 집에서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미쳤네, 미쳤어, 들었나, 제정신이 아니제, 미친놈 아니가 진짜, 쫓, 또라이 아니가, 또라이, 쫓, 울고 지랄이고.”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아동이 울고 있는데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텔레비전을 시청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가해자인 아이돌보미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수집한 ‘피해아동의 울음소리 등에 반응하여 가해자가 피해아동을 상대로 하는 말’ 이 녹음된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업무 공간에서 발생하는 피고인의 목소리 등을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한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 정도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비교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현저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라는 점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해 아동은 아직 언어 능력이 온전히 발달하지 않아 피고인이 하는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결국 본 건 범죄 성립 여부는 피고인 말의 내용이 아닌, 목소리의 크기, 억양 등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생후 10개월의 피해 아동에게도 충분히 위협적으로 들릴 만한 것인지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하는 말 부분’ 중 증거로 필요한 부분은 피고인 말의 내용이 아닌 피고인의 목소리, 억양 등 비언어적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하는 말은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 를 의미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하여, 녹음파일에 담긴 발언 내용이 아닌 비언어적 정보에 국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⁴⁾

최근 토론자 본인이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는 사건⁵⁾의 1심 법원 재판장 역시 “법률에 명시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돼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안에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 증거능력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는 내용의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가 적용되기는 어렵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리는 증거능력의 인정이 가능한 만큼 때리는 소리 외에 어디까지를 대화가 아닌 부분으로 볼 것인지를 검토하여 판결문에 반영하겠다.” 라며 위 대구지방법원 판결례의 취지에 따라 판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즉 현재 법원의 태도에 비춰보면, 학대피해자인 최종증장애인의 동의조차 받지 못한 채 녹

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등.

4) 대구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1809 판결.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1177, 2021. 12. 20. 판결 선고 예정.

음기를 설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은 설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더라도 그 내용전부가 유죄인정의 증거가 되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최종증장애인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취약성으로 인해 스스로 자기보호를 전혀 하지 못해 학대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제보를 통해 학대정황이 인지됐을 때 제3자가 대화당사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녹음기설치 없이는 해당 학대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인지가 부족하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최종증장애인에 대한 학대범죄에 있어서, 법원이 조금 더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대화의 내용에 대하여도 전부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증거가 없어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패삼아 최종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사의 학대범죄는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은폐될 우려가 크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이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최종증장애인에 대한 학대범죄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긴급하게 이뤄진 녹음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비밀녹음과 동등하게 위법수집증거라는 전제에서 벗어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⁶⁾.

「통신비밀보호법」은 제4조에서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라고 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요건으로 ‘불법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녹음기 설치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감청’이 아닌 게 된다면 이를 통해 수집한 녹음파일의 내용 전부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은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⁷⁾ 물론, 해당 판결은 ‘음성이 비밀리에 녹음된 부분은 약 23초에 불과하다는 점’, ‘발언이 공개된 장소인 교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사실로 삼고 있는 바, 이러한 해석범위도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고 스스로 방어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최종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

6) 참고로,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하기 위하여는 ①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의미에서 보충성을 갖추었는가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68478 판결.

II.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개선을 위한 활동지원기관의 역할강화 방안

1. 활동지원기관의 역할강화를 위한 법률적 뒷받침의 필요성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을 받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활동지원사의 사용자일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사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활동지원사에 의해 발생한 장애인 이용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박현희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총괄팀장이 발제문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활동지원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활동지원기관의 의무에 포함시키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다만 활동지원기관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활동지원사에 의해 행해지는 학대를 예방·개선하기에는 부족함이 따르며, 그들이 그러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뒷받침이 이뤄질 필요도 존재한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활동지원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 시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제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2.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제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제6호를 통해 활동지원인력이나 그 밖의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한 폭행·상해·성폭행·성희롱·기본적인 간병 및 보호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이처럼 현행법은 활동지원사들에 의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활동지원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하다보니 활동지원기관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제59조의 4 제2항 제2호)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사에 의한 인권침해행위 발생 시 그 대응에 소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해당부분을 활동지원기관이 본연에 책무에 충실할 경우 제재에 대한 예외

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의 개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으로는 「영유아보육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과 「폐기물 관리법」의 내용을 꼽아볼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 또는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임원 또는 사용인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

나.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영유아보육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폐쇄 등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과 관련하여 설치·운영자 또는 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은 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신속하게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외시키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외 규정이 활동지원기관의 업무정지, 지정 취소 등의 경우에도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영유아보육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표현은 추상적이어서 활동지원기관의 책임을 지나치게 축소시킬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폐기물 관리법」이 규정한 형식을 빌려, ① 활동지원기관이 상시적으로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를 확인 ② 발견 즉시 신고 및 긴급분리조치 ③ 신속한 대체 인력 제공 과 같이 적절한 대응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에 제재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활동지원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

김 용 란 /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활동지원 정책이 제도화된 배경은 2006년도 소수의 중증 장애인들이 한강 대교를 점거하고 무릎이 까지고 땀 범벅이 되도록 기어서 건너간 투쟁의 결과물이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오늘까지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활동지원사란 명칭으로 일자리 창출이 자리매김 되었다.

허나 아직도 활동지원사들의 처우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자 간의 불화와 인권 침해 착취 폭행 등 어두운 그늘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제 오랜 지인의 사례를 하나 말씀 드려고자 한다.

(지인을 박 모씨 활동지원인을 유 모씨라 함.)

박 모씨와 유 모씨는 30년 지기이다 박 모씨는 시각장애 1급이며 그때 당시 박모씨는 돌봐줄 가족도 집도 없어 유 모씨 집에서 함께 살며 유 모씨가 활동지원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 모씨는 정작 케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꼬박꼬박 챙겼고 박 모씨가 안마사 일로 벌여오는 돈을 착취하고 부정으로 통신 감면을 받는 등 여러모로 이용을 해왔다. 부당함을 느낀 박 모씨는 그 집을 도망치듯 나왔고 시각장애인 거주시설로 들어가 생활했다. 그리고 몇 년만에 동의 없이 설치한 위치추적기로 시설을 찾아와 박 모씨를 회유하여 또 같이 살게 되었고 예전과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보다 못한 가까운 지인의 도움과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과 대응하여 지역에서 자립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박 모씨는 오랜 시설 생활로 인해 자존감이 낮다 보니 박 모씨는 지원사가 계획한 일정과 패턴에 따라 살고 있으며 갈등이 심화되어 지원사가 자주 바뀌고 있다.

활동지원 제도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순 기능을 해야함에도 박 모씨 뿐만 아니라 불미스러운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고 한다.

활동지원사는 발달 장애인 이용자가 지원사에게 엄마라고 부르는걸 당연히 받아드린다고 한다. 가사 지원은 이용자의 욕구가 범위를 넘어서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고 지원사는 경험치가 다르다 보니 부당함에 언쟁과 싸움으로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의사 소통이 안되는 중증 이용자를 폭행하고 자기들끼리 흥보고 놀리는걸 실습생이 보고 신고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중증 이용자 일수록 의존도가 높다보니 사생활 침해가 더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활동지원사 사이에는 이용자를 높은 바우처 시간과 다루기 편한 이용자와의 매칭을 바란다. 지원사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이용자들은 씩씩하지 않을 수 없다. 각설하고 활동지원사는 이용자를 수혜의 대상으로 여겨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분들도 있다.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이만 각설하고 앞으로 활동지원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잡으려면 지원사와 이용자 관리 기관의 노력과 이해가 필요하다. 지원사는 이용자의 삶의 개입이 아닌 결정권을 존중하고 본연의 자리를 묵묵함으로 지켜간다면 이용자 역시 활동지원사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금만 배려한다면 이런 간극들이 좁혀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사회 자립을 열망하며 땀 흘려 이룩한 장애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한 단면적인 일들을 모든 활동지원사 분들이 회자되는 것 같아 조심스럽다. 오해가 없길 바라며 일선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께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신의 관심! 한 통의 전화!
변화하는 장애인의 삶

장애인차별상담 및 학대신고

1644-8295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Gyeonggibukbu Advocacy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가평 · 고양 · 구리 · 남양주 · 동두천 · 양주 · 연천 · 의정부 · 파주 · 포천

11813) 경기도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 140, 성산타워 301호
전화 031-851-1007 / 팩스 031-851-1008 / 메일 ggndrc@gmail.com / 홈페이지 www.ggnaapd.or.kr